

월간
재정포럼

2021. October_Vol.304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10

권두칼럼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하는 양상블 재정개혁 | 박정수

현안분석

국내 순환경제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경제적 유인을 중심으로 | 배진수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및 논의 현황 | 윤성주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이 담긴 조세개혁 패키지 승인 외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CONTENTS

권두칼럼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하는 양상블 재정개혁 | 박정수 02

현안분석

국내 순환경제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경제적 유인을 중심으로 | 배진수 08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및 논의 현황 | 윤성주 3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이 담긴 조세개혁 패키지 승인 외 58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하는 양상블 재정개혁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는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부도 위험을 혹독하게 견뎌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4대 재정개혁의 근간을 제도화한 「국가재정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기존 「예산회계법」과는 달리 「국가재정법」은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90년대 민주화가 가속화되면서 각 이익집단의 요구에 정치권이 휩쓸리고 예산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 확대가 다시 추진되었으며, 방만한 재정 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재정개혁을 정부 개혁의 중요한 요소로 선정하고,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소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성과관리,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budgeting), 그리고 디지털 예산회계제도가 그것이다.

제정제도의 책무성 확보 노력이 필요한 때

필자의 학교 주변은 평상시 관광객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로 붐벼 캠퍼스가 몸살을 앓곤 했다. 상가도 번창해 나름 패션과 먹거리 1번지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팬데믹 위기로 캠퍼스 주변 상가는 거의 절반 이상 비어 있고 썰렁하기까지 하다. 정부도 지난해 네 차례의 추

경, 올해만 해도 벌써 두 차례의 추경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 수준이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한 데다, 합계 출산율이 0.8명에도 못 미치는 저출산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령화 속도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점차 떨어져 가는 잠재성장률에 기반하여,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국가신인도 유지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한다. 반면 국가부채는 수치 그 자체보다는 근본 원인이 되는 민간부문의 불균형, 즉 내수 부족, 양극화, 일자리 부족, 경상수지 적자 등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두 시각 모두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화 맹신이나 비기축통화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아니라, 우리의 복지 성숙단계와 능력에 적절한 사회보험 재구조화 기제를 마련하고 유연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재정통제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하려는 재정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입법부 양측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노무현 정부의 재정개혁에 대한 반성

4대 재정개혁의 출발은 예산실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했다. 중앙예산기구는 총액과 한도만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개별 사업 부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는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는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개별 사업부처가 사업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예산기구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었다. 중앙예산기구는 거시적 관점의 통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했다. 따라서 중앙예산기구는 총량적 재정규율 (aggregate fiscal discipline)을 관리하고 개별 사업부처는 정보 비대칭을

.....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화 맹신이나
비기축통화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아니라,
우리의 복지 성숙단계와
능력에 적절한
사회보험 재구조화
기제를 마련하고
유연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재정통제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

**노무현 정부의
4대 재정개혁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이들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중 하나가
허물어지니 서로
연동하여 실효성을
상실했고, 결국
형식주의적
재정제도 운용에
그쳤다.**

극복하기 위해 개별 사업에 대한 결정을 책임지도록 설계했다. 그리고 개별 부처의 사업 결정에 대해 중앙예산기구는 사후적인 성과평가 관리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재정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다. 일체의 금융정책 수단이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하자 재정지출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일자리예산과 저출산대책예산 등에 예산 조기 집행이 가미되면서 ‘밀어내기식’ 예산운용이 만연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4대 재정개혁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이들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중 하나가 허물어지니 서로 연동하여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이 이러한 취지를 따르지 못했다.

형식주의적 재정제도 운용은 예산과정의 또 하나의 축인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예산심사 부재, 예결위원의 전문성 부족, 쪽지 예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거시적 관점에서의 예산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국가재정운영이 중장기적으로 타격을 정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예결위원의 임기가 짧아 전문성 확보에 미흡한 환경이며 지역구 예산을 위한 지대추구 문제를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인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진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먼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을 준비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지만, 국회가 이를 심사하는 기간은 두 달 정도로 너무 짧아서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렵다. 또한, 예산안의 내용이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되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외부의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은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예결위 위원들이 자주 교체되어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의 심도 있는 거시총량 중심 예산안 심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앙상블 재정개혁

재정제도가 미래 책무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전체가 거시총량 중심으로 바뀌고, 부문별 한도 설정 등 견제 역할(watchdog)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만으로 중장기 준칙에 의거한 거시 재정운용을 기대하기에는 미래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기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확대에 따른 대중융합주의를 극복하고 견제와 균형의 제도개혁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대적 여야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설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책기획, 예산편성, 성과평가, 공공기관 정책 등을 모두 관장하며 과부하가 걸린 기획재정부가 거시총량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재정준칙의 제도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심의제도도 전문적이고 전업으로 거시한도 설정에 대한 설계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재정총량위원회가 거시재정운용에 나라살림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되어야 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재구조화도 필수적이다. 재정총량위원회가 상원과 같은 특권적 지위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거시한도 설정과 모니터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의무적 지출에 대한 수지 균형 중심의 재정준칙 법제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2004년의 4대 재정개혁이 행정부 중심이었다면, 향후 재정개혁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추진하는 앙상블이 되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재정도 지속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

**2004년의
4대 재정개혁이
행정부 중심이었다면,
향후 재정개혁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추진하는
앙상블이 되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재정도 지속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국내 순환경제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경제적 유인을 중심으로

배진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및 논의 현황

윤성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국내 순환경제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경제적 유인을 중심으로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jsbae@kipf.re.kr)

I. 서론

산업혁명 이후 경제활동은 채취(take), 생산(make), 소비(consume), 처분(dispose)으로 이루어지는 선형경제 구조하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물질소비의 증가는 자원고갈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4; 자원순환기본계획, 2018). 자원고갈은 원료 공급 부족 및 가격 변동성과 같은 경제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폐기물 매립지 고갈과 같은 환경문제는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지역 간·국가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UN은 현재와 같은 소비 패턴이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마치 지구가 3개가 있는 정도의 천연자원 소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UN, n.d; European Commission, 2020).

이러한 문제 인식에 대응하여 최근 10여년간 선형경제의 대안으로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 대한 학계, 국가기관, 기업들의 관심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Merli et al. 2018; Chisellini et al. 2016). EU는 2015년 순환경제 패키지를, 2020년에는 신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폐기물 저감 및 친환경적인 처리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순환경제로의 세계적인 변화는 국내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EU는 2030년부터 페트(PET)병에 대한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을 30%로 설정하였

는데(EU, 2019), 이는 유럽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폐기물 관리와 규제정책을 통해 1인당 도시폐기물 발생량이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상우, 2017). 하지만 최근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포장재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순환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순환경제는 2020년 말에 수립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10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으며 환경부와 산업부는 금년까지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으로, 정부 또한 순환경제 구현에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순환경제의 정의 및 국내외 순환경제 현황을 소개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대해서 언급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및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경제적 유인의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순환경제의 정의 및 국내외 현황

1. 순환경제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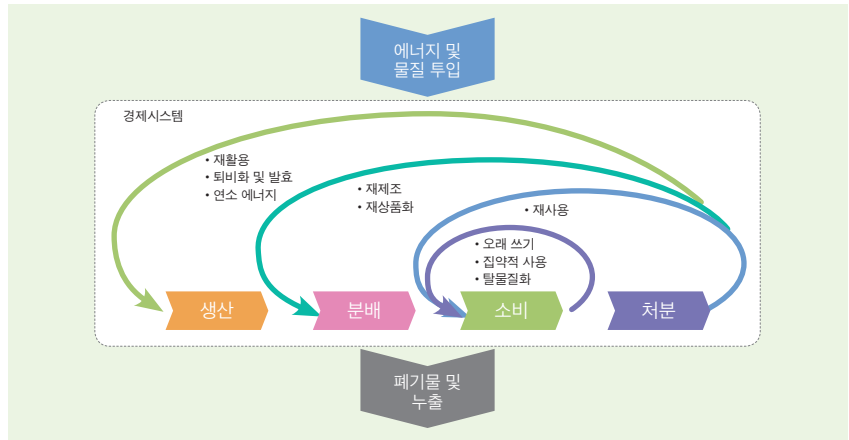
순환경제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지칭한다(Merli et al., 2018). 첫째는 경제체계 내에서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지구에 존재하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자원을 사용할 때 그 자원이 가진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두 번째로는 에코효율성(Eco-Efficiency)¹⁾을 추구하는 것이다. 에코효율성은 창출된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환경 영향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 활동의 환경 영향은 최소로 줄이면서 가치창출은 극대화하여 경제와 환경의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장지인, 2007). 세 번째는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지구의 자정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을 자정능력 이하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순환경제는 그

**본고에서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및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경제적
유인의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환경·경제효율성이라고도 하며 Eco-Efficiency에서 Eco는 경제(Economy)와 생태(Ecology)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양인목 외, 2013).

순환경제는 선형경제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계에서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게 하여 자원의 투입과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순환경제 모식도



출처: Geissdoerfer et al.(2020), p. 4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 그 자체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감축(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자원회수(recover)와 같은 순환경제 수단들을 통틀어 순환경제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순환경제의 개념은 [그림 1]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기존의 선형경제는 에너지와 자원을 투입하면 생산이 이루어지고 분배, 소비, 처분의 단계를 거쳐서 폐기물 발생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순환경제는 이러한 선형경제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계에서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게 하여 자원의 투입과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모식도에서 볼 수 있는 과정을 순환경제의 고리를 닫는다(closing the loop)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순환경제에 대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념이 존재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순환경제는 주로 적절한 폐기물 관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다(Ghisellini et al., 2016). 예를 들어, EU는 2014년에 순환경제 패키지의 초안을 “A zero waste programme for Europe”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지만,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초안은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철회된 적이 있다(박상우, 2019).

최근 10여년간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은 폐기물 관리를 벗어나 앞서 언급한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전체의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EU는 2014년 순환경제 패키지 초안이 폐기된 이후 이해관계자들을 대

<표 1> 해외 주요국의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현황

국가/기관	명칭	설명
유럽연합 (EU)	EU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Circular Economy (2018)	순환경제의 4단계(생산과 소비, 폐기물 관리, 이차원료, 경쟁력 및 혁신)에 따라 그룹화된 10개의 지표로, EU 및 회원국의 순환경제 진전 상황을 보여줌
개별 국가	France Key Indicators for Monitoring the Circular Economy(2017)	프랑스 경제의 순환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10개의 지표로, EU와의 비교분석을 포함함
	Netherlands Circular Economy Monitoring System(2018)	네덜란드 경제의 순환성을 측정하기 위한 21개의 지표로, 이 또한 EU와의 비교분석을 포함함
	Japan 3rd Fundamental Plan for Establishing a Sound Material-Cycle Society(2013)	자원 축적량에 초점을 둔 경제(투입, 유통, 산출)에서의 물질흐름에 기반한 지표에 해당함
	China Circular Economy Indicator System(2017)	중국의 지표 시스템은 17개의 특정한 지표를 포함한 물질흐름에 기반함

출처: 조지혜 외(2021), p. 2

상으로 공개 상담을 실시하는 등의 전면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 2015년 12월에 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5). 2015년에 발표된 순환경제 패키지는 생산 및 소비에 있어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쟁력 강화, 폐기물 감축과 친환경적 처리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 추세가 단순히 폐기물 처리나 재활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포괄적인 목표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대 중후반부터 EU 회원국들과 중국, 일본은 순환경제의 다양한 목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표 1> 참조).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추진하여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주요 목표가 폐기물 발생량 감축, 재활용 증대, 매립량 감축 등으로 주로 폐기 단계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순환경제 지표 또한 폐기물의 원단위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에너지 회수율의 네 가지로 설정되어 있는데(<표 2> 참조), 현재의 지표만으로는 원료 사용의 효율성, 물질 흐름의 순환성, 혁신 및 국가 경쟁력 등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EU 국가들과 중국, 일본은 순환경제의 다양한 목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순환경제 지표가 폐기물 단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만큼 본 장에서는 폐기물 통계를 중심으로 국내 순환경제 현황을 살펴보고 OECD 회원국들의 폐기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의 자원순환 지표

지표	산정방법	단위
원단위 발생량	폐기물 발생량/국내 총생산	톤/년·십억원
순환이용률	실질재활용량 ¹⁾ /폐기물 발생량	%
최종처분율	최종처분량 ²⁾ /폐기물 발생량	%
에너지회수율	에너지화된 폐기물/가연성 폐기물	%

주: 1) 실질재활용량은 기존의 재활용 통계에서 잔재물 발생량을 제외한 양을 의미함
 2) 최종처분량은 발생 후에 매립되거나 중간 처리과정을 거친 후에 매립된 양의 합계를 의미함
 출처: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201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국내 순환경제 지표가 폐기물 단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만큼 본 장에서는 폐기물 통계를 중심으로 국내 순환경제 현황을 살펴보고 OECD 회원국들의 폐기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 순환경제 정책환경 변화를 소개하면서 왜 단순히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서 경제 전반의 순환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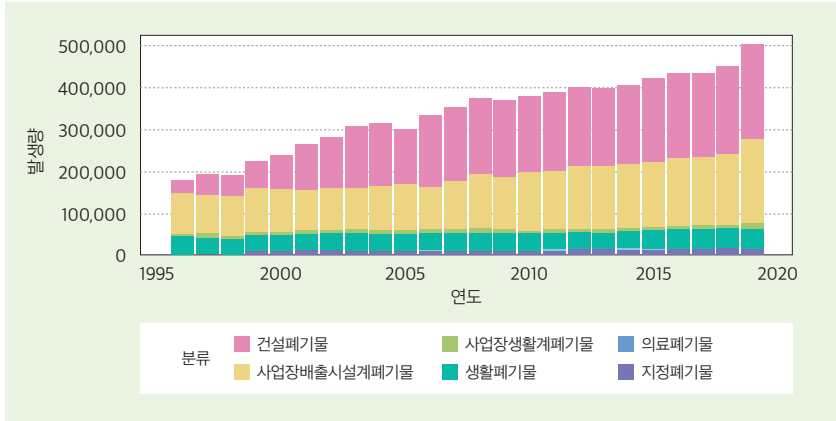
2. 국내 폐기물 및 OECD 주요 국가별 도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그림 2]는 199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1996년 17만 5,334톤/일이었던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49만 7,238톤/일까지 연평균 4.64%만큼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건설 폐기물은 1996년도 2만 8,425톤/일에서 2019년도 22만 1,102톤/일로 연평균 9.32%만큼 증가했으며,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9만 6,984톤/일에서 20만 2,619톤/일로 연평균 3.25%, 생활계폐기물은 4만 9,925톤/일에서 5만 7,961톤/일로 연평균 0.65% 증가하여 건설 폐기물의 증가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의 좌측은 1년 총 폐기물 발생량을 실질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원단위 발생량(톤/십억원)을, 우측은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을 인구수로 나눈 일인당 생활계폐기물(kg/인구)을 보여주고 있다. 원단위 발생량과 일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일정한 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 발생량이 총생산량 및 인구 증가와 비례관계임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즉, 폐기물의 발생량은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와 함께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국내 폐기를 발생 현황(폐기를 분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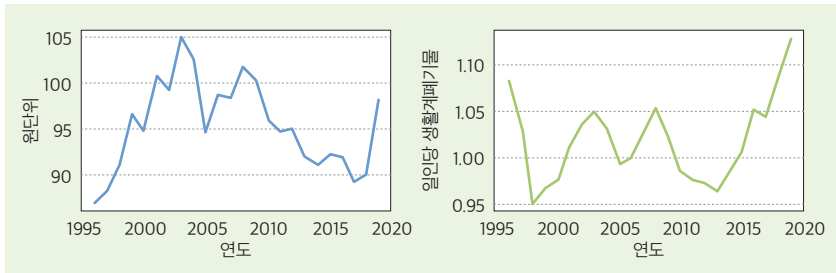
(단위: 톤/일)



출처: KOSIS,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국내 폐기물 발생 현황(원단위, 일인당 생활계폐기물)

(단위: 톤/일)



출처: KOSIS,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4.64%만큼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폐기물의 원단위 발생량과 일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일정한 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 발생량이 총생산량 및 인구 증가와 비례관계임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원단위 발생량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원료의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였고, 원료의 사용량과 GDP 성장의 디커플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현상이다(OECD, 2020). 하지만 2019년의 경우 원단위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9년에 급격히 증가한 사업장 배출 시설계폐기물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원단위 발생량의 추세 전환은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도 존재한다.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추세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변동 폭 안에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생활폐기물의 30~40%가량이 포장재 폐기물이라는 추정 근거가 있다면(환경부, 2018a), 1인가구의 증가나 택배이용 등의 증가로 인해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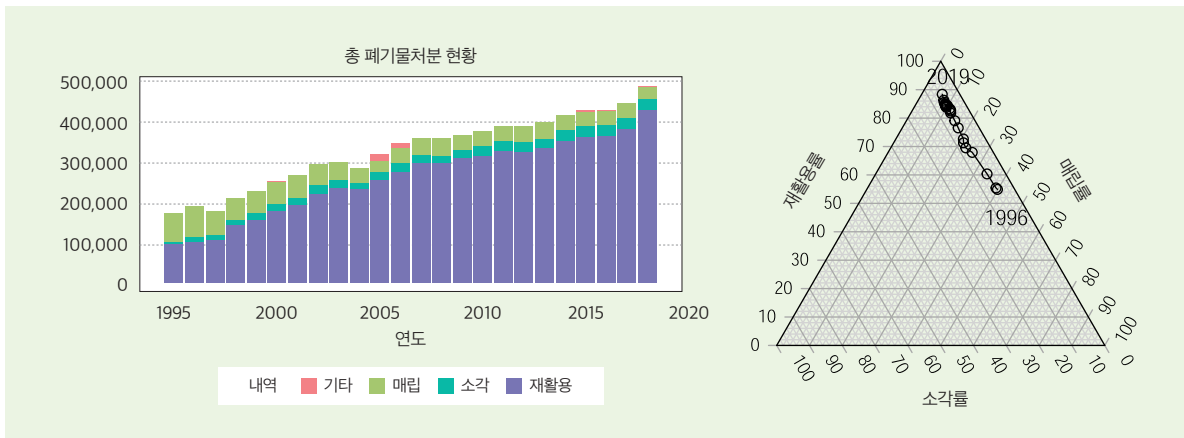
[그림 4]는 폐기물 처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폐기물의 발생량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매립 혹은 소각 처리하는 양은 1996년도 7만 9,074톤/일에서 2007년에 5만 9,235톤/일을 기록했으며 이후 꾸준히 6만톤/일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재활용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1996년도에는 55% 정도였으나 2007년도에 80%를 기록했고 이후 조금씩 늘어나 2019년에는 86%대에 다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소각 비율은 15%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매립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²⁾

다만 폐기물의 86%가량이 실제로 재활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통계는 실제로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으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폐기물 수거량 중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수거된 모든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으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행 통계의 재활용량은 과대 계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영재·장용철, 2016).

2) 매립, 소각, 재활용의 구성비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생활계폐기물의 경우 매립, 소각, 재활용의 비율은 각각 12.7%, 25.7%, 59.7%이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9.2%, 4.0%, 82.6%, 건설폐기물은 0.8%, 0.3%, 98.9%이다.

[그림 4] 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톤/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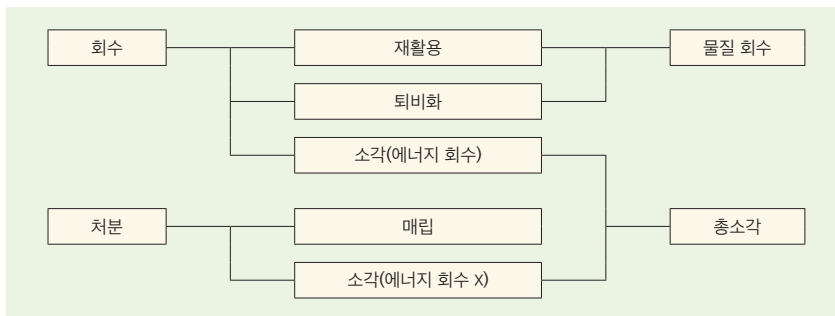
출처: KOSIS,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OECD의 도시폐기물(Municipal waste) 통계는³⁾ 폐기물 처리를 회수(Recover)와 처분(Disposal)으로 구분하고 있다. 회수는 크게 재활용(Recycling), 퇴비화(Compositing), 에너지 회수 수반 소각(Incineration with Energy Recovery)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재활용과 퇴비화를 합쳐 물질 회수(Material Recovery)라고 한다. 처분은 매립(Landfill), 에너지 회수 비수반 소각(Incineration without Energy Recovery)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 회수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소각을 총소각(Total Incineration)이라고 한다.

[그림 6]은 OECD 주요 국가에서 1인이 1년 동안 발생시키는 도시폐기물 발생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2년부터 4년 주기의 폐기물 발생량 추이를 보면,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1인당 도시폐기물 발생량이 소량 감소하는 추세이거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1인당 도시폐기물 발생량이 소량 감소하는 추세이거나 변화가 거의 없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도시폐기물의 배출량이 인구수와 안정적인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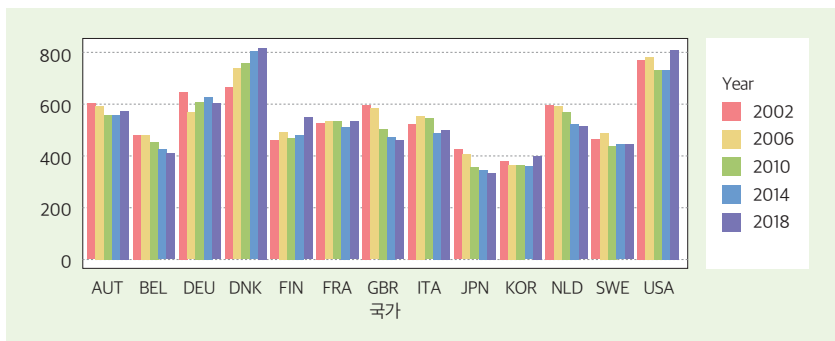
[그림 5] OECD 도시폐기물 처리 분류체계



출처: 박상우(201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6] OECD 주요국 1인당 도시폐기물 발생량

(단위: kg/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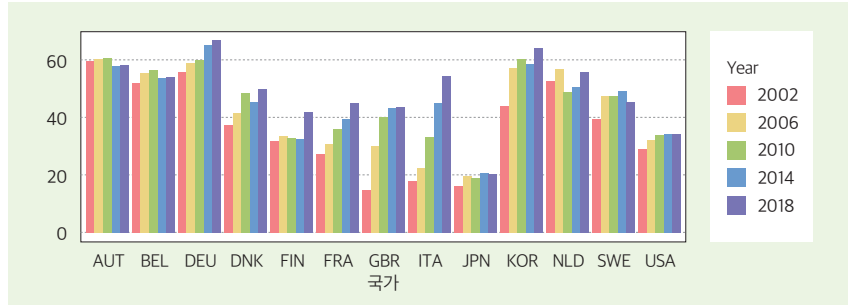


출처: OECD, Municipal waste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OECD 도시폐기물 통계는 국내의 생활계폐기물 통계와 대응된다. 다만 OECD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데이터 각 항목의 정의나 집계방식이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OECD, 2021).

OECD 주요국의 물질 회수 비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물질 회수 비율이 낮았던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물질 회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OECD 주요국의 매립률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소각률은 변화가 없거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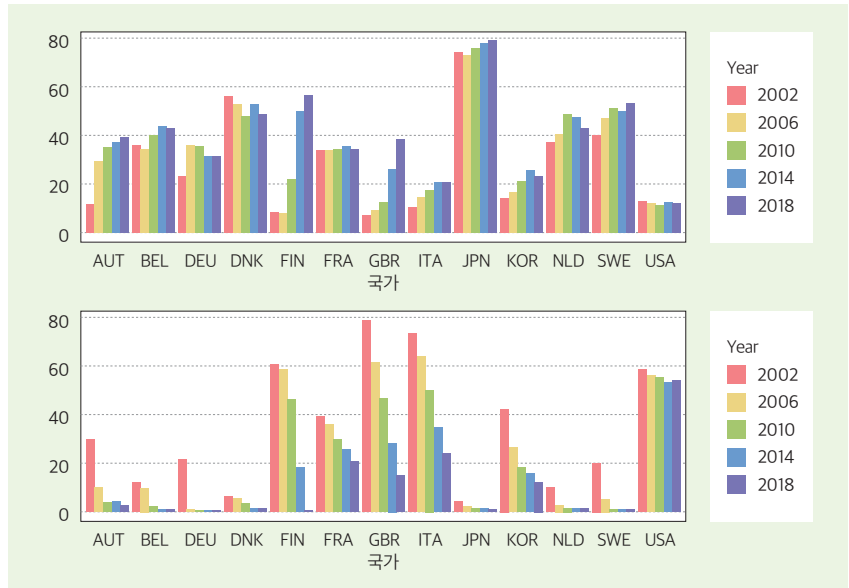
[그림 7] OECD 주요국의 물질 회수(Material Recovery) 비율



출처: OECD, Municipal waste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8] OECD 주요국의 소각률(위) 및 매립률(아래)

(단위: %)



출처: OECD, Municipal waste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변화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도시폐기물의 배출량이 인구수와 안정적인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조사 연도에서 한국의 도시폐기물 발생량은 1인당 400kg/년 이하로 일본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은 국가별 물질 회수(Material Recovery, 물질 재활용+퇴비화) 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질 회수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물질 회수 비율이 낮았던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물질 회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꾸준히 물질 회수 비율이 증가하다가 2010년도에 이르러 물질 회수 비율이 60%에 달했으며, 가장 높은 물질 회수 비율을 보이고 있는 독일보다 약간 낮은 물질 회수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은 OECD 국가별 소각률과 매립률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매립률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소각률은 변화가 없거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폐기물 매립 금지 정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의 매립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만큼 재활용이 힘든 폐기물을 소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매립률이 크게 낮아졌지만 소각률이 상응하여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매립률이 낮은 대신 소각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립률이 매우 낮은 나라들에 비해서는 매립률이 높은 편인데, 향후 매립률을 계속하여 줄여나가는 정책을 시행하면 소각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순환경제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이상의 폐기단계 지표에 기초하여 볼 때 국내의 순환경제 성과는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1인당 생활폐기물, 높은 물질 회수율 등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1인당 생활계폐기물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 등에 비해 높은 매립률은 국토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고 매립지 추가 건설이 어려운 국내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순환경제 관련 정책환경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과 정책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보고자 한다.

■ 코로나19 장기화 및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인한 포장재 폐기물 증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및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여 배달용 식품 용기 및 포장재 플라스틱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상반기 폐종이 발생량은 2019년 상반기 대비 29.3% 증가하였고, 폐플라스

국내의 순환경제 성과는 OECD 국가 대비 낮은 1인당 생활폐기물, 높은 물질 회수율 등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1인당 생활계폐기물과 일본, 독일 등에 비해 높은 매립률은 국토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고 매립지 추가 건설이 어려운 국내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비대면 소비 증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매립지는 고갈되고 있어 폐기물의 원천적인 저감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유가 하락 및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재활용 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불법행위의 유인이 커지는 상황이다.

틱과 폐비닐류 또한 각각 15.6%와 11.1% 증가하였다. 이러한 포장재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중 무게비로 30~40%, 부피비로는 50~60%를 차지하는 만큼 포장재 폐기물의 증가는 전체 생활계 폐기물의 증가로도 쉽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예정

인천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에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다(인천광역시, 202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이후 서울, 경기도의 폐기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 원천 저감 및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대안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의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 수도권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부 사태 및 불법 방치 폐기물 문제

2018년 4월 수도권 등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민간 재활용업체가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특히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된 플라스틱폐기물(폐비닐류, 스티로폼, 혼합플라스틱류 등)의 수거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수거 거부 및 중단 사태의 원인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한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단가 하락, 플라스틱 신재 원료인 유가의 하락 등 전반적인 재활용 시장 침체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된다(환경부, 2020a).

한편 경상북도 의성에 불법 방치된 17만 3천톤의 쓰레기 산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폐기물 불법투기 및 방치 폐기물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후 환경부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에 걸쳐 120만톤의 불법 폐기물이 야적되어 부실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환경부, 2019). 이러한 불법 방치 폐기물의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및 처리 단가의 상승으로 알려졌다(이선화, 2019).

이상을 요약하자면 비대면 소비 증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매립지는 고갈되고 있어서 폐기물의 원천적인 저감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천연원료인 유가 하락 및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재활용 시

장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재활용 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불법행위의 유인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폐기물 관리와 규제 정책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생산 및 소비자들의 근본적인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재활용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의 정책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도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환경부, 2020a).

Ⅲ. 순환경제 분야 재정투자 및 관련 정책 현황

1. 순환경제 분야 재정투자 현황

순환경제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재정투자 및 관련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우선 최근 연도의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표 3>은 최근 7년간 환경부의 자원순환 분야 예산을 보여주고 있다. 「재활용산업 육성용자」 사업이 자원순환 예산항목에서 분리된 것을 감안하면 자원순환 예산은 2019년 기준 2,262억 원에서 2020년 2,669억원으로 약 18.0%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21년에는 2,939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1% 증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순환경제는 정부가 2020년 하반기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재정투자의 규모는 한동안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예산의 세부 내용을 보면 2019년도의 경우에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표 3> 환경부의 최근 7년간 자원순환 분야 예산 현황 및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자원순환 ¹⁾	3,105	3,477	3,492	3,147	3,545	2,669	2,939
재활용산업 육성용자	1,036	1,036	1,329	1,283	1,283	-	-
재활용산업 육성용자 제외 예산 ²⁾	2,069	2,441	2,163	1,864	2,262	2,669	2,939

주: 1) 2015~2017년은 폐기물 분야 예산임

2) 재활용산업 육성용자 사업은 2020년 미래환경산업 육성용자 사업으로 통·폐합(자원순환→환경경제)

출처: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연도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순환경제는 정부가 2020년 하반기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재정투자의 규모는 한동안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일부 사업만 순환경제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20년 이후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예산규모도 2020년
기준 약 171억원에서
2021년 338억원,
2022년 784억원으로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표 4> 산업부 순환경제 관련 사업 및 예산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연도별 예산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R&D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사업	2021~	-	-	-	-	24	66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사업	2007~2020	121	88	18	5	-	-
	첨단제품 전후방산업의 순환자원이용 기술개발	2018~2022	-	17	37	49	39	34
	제조업 활력제고를 위한 산업기계 에너지저감형 재제조 기술개발	2020~2024	-	-	-	59	90	95
	특수차량 노후엔진 및 배기장치 전자기술 연동 재제조 기술개발	2020~2022	-	-	-	58	56	54
	자원순환이용 수소급속 회수 공동활용기술개발	2021~2025	-	-	-	-	50	74
	저열화성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2021~2024	-	-	-	-	30	62
	이차전지 재활용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사업	2021~2024	-	-	-	-	20	30
R&D	EV·ESS 응용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	2021~2024	-	-	-	-	30	40
	재생자원의 저탄소 산업원료화 기술개발	2022~2026	-	-	-	-	-	62
	에너지저감 공정축매 재자원화 기술개발	2022~2025	-	-	-	-	-	91
	저탄소 고부가 전극재생 혁신기술개발	2022~2026	-	-	-	-	-	36
	전자산업 재생소재 순환성 검증 기반구축	2022~2026	-	-	-	-	-	20
	탄소중립 E-FUEL 연료시스템 및 차량 적용/검증 기술개발	2022~2025	-	-	-	-	-	47
	석유화학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형 석유계 원료대체 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	2022~2024	-	-	-	-	-	74
	합계		121	105	55	171	309	785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재정운용계획(2021~2015) 자원 순환경제 아젠다」 2차 회의

(67억원 → 124억원), 미래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신규 3억원) 등 일반적인 폐기물의 수거·회수·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2020년의 예산은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예산을 크게 확충(109억원 → 361억원)하고 재활용품 비축사업 예산을 편성(신규 94억원)하는 등 쓰레기 산 이슈와 재활용 시장 기능 약화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도 예산은 재활용품 비축사업을 대폭 확대(94억원 → 259억원)하고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사업 예산을 편성(신규 54억원)하여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른 포장재 사용량 증가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표 4>는 산업부의 순환경제 관련 예산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사업과 첨단제품 전후방산업의 순환자원이용 기술개발의 2개 사업만 순환경제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예산규모도 2020년 기준 약 171억에서 2021년 338억원, 2022년 784억원으로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예산은 연구개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제조 및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환경부와 산업부 재정투자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순환경제 분야 재정 투자는 2020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재정투자의 방향 또한 기존의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포장재 폐기물 원천 저감을 위한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재활용품 비축사업 등 최근 순환경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의 재제조 및 재활용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 투입은 또한 기존의 폐기물 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경제 내에 유지하도록 하는 순환경제의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2. 국내 순환경제 정책 현황

<표 5>는 국내의 주요 순환경제 관련 제도를 정리 요약한 것이다. 국내에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제도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혹은 의무화하는 직접규제와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간접규제 형태로 나타난다.⁴⁾ 예를 들어,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 억제는 직접규제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경제적 유인을 통한 간접규제로 볼 수 있다.

순환경제 관련 제도 중 최근에 도입된 제도들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 전략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우선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및 시행과 함께 2018년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와 순환자원인정제도가 시행되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폐기물 증가에 따라 매립 및 소각의 환경 영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 실효적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정되었다(환경부, 2018b). 순환자원인정제도는 재생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철이나 폐지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관리됨으로써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자원으로서의 인식이 저해된 점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해당 제도는 재활용산업에 법적 안정성을 주고, 폐기물 처리 허가 등에 대한 행정부담 감소, 안정적인 2차 원자재 확보를 등을 통해 재활용 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

산업부의 재제조 및 재활용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투입은 또한 기존의 폐기물 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경제 내에 유지하도록 하는 순환경제의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4) 이론적으로는 직접규제와 간접규제가 구분되지만 일부 정책수단은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도 하며 일부 정책은 규제라기보다는 규제 완화의 측면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국내에 다양한 순환경제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제도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혹은 의무화하는 직접규제와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간접규제 형태로 나타난다.

<표 5> 국내 자원순환제도

직접규제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 억제	과대포장 제품 대형마트 진열·판매금지 커피전문점 등의 1회용품 사용금지 등
	분리배출표시제도(2003)	재활용 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분리배출 여부를 표시하는 제도
	환경성보장제도(200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해물질 사용 억제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생산하도록 관리
	재활용환경성평가(2016)	재활용 기술 및 방법의 환경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안전한 경우에만 승인하는 제도
	포장재재질구조 평가제도(2019)	재활용 대상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경우 표시 의무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2014)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 및 폐기를 다량 배출사업자 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
간접규제	폐기물부담금제도(1993)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생산 혹은 수입하는 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자발적협약제도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업자가 환경부와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2003)	재활용 가능 제품 혹은 포장재를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
	쓰레기 종량제(1995)	생활계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발생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
기타	빈용기보증금제도(1985)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별도의 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도(2018)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지자체 및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순환자원 인정 제도(2018)	고철이나 폐지처럼 경제성이 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폐기물들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주: 괄호 안은 시행 연도를 의미
출처: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는 것이 목적이다(환경부, 2017). 2019년에는 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로 만드는 경우 페널티 혹은 판매중단 조치를 통해 재활용이 용이하게 설계하도록 만드는 제도이다. 이는 최근 포장재 폐기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 여러 자원순환경제 정책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국내의 자원순환경제 정책들 중 폐기물 처분부담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 정책이 실질적으로 경제 주체의 행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정책적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또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IV.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1.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과 함께 2018년부터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처분부담금을 부과하여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와 유사한 매립세(landfill tax)는 많은 EU 회원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1990년도 후반부터 시행하여 현재는 23개국에서 시행 중에 있다(CEWEP, 2021).⁵⁾ 본 장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가 재활용의 비중을 실제로 증가시킬지에 대한 실효성 논의와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를 통해 재활용을 증대시키는 목적이 사회적으로 최적인지 그 타당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선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가 실제로 재활용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제도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2017년의 국내 재활용률은 약 85.4%였는 데 반해 2019년도의 재활용률은 약 86.6%로 추세적인 변화 이외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적어도 현재의 가격 책정으로는 경제 주체들의 단기적인 행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가격 부담이 높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었다고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폐기물처분부담 비용이 제일 높은 건설 폐기물의 매립부담금은 1톤에 3만원이지만 영국에서 1톤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96.70파운드(약 15만 7천원)가 들어 약 5배 정도의 비용 차이가 난다. 매립세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최대 부담금이 20유로보다 낮은 경우는 5개국에 불과하다(CEWEP, 2021).

하지만 단순히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높게 책정한다고 해서 매립 및 소각이 줄어들고 재활용이 높아진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처분부담금의 인상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립부담금 혹은 소각부담금이 재활용에 미치는 교차 탄력성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단기에 대해서 이러한 교차 탄력성이 높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이에 관한 실증연구를 찾기 어려우나 환경부(2015)가 설문조

본 장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재활용의 비중을 실제로 증가시킬지에 대한 실효성 논의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를 통해 재활용을 증대시키는 목적이 사회적으로 최적인지 그 타당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5) EU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영국과 스위스도 매립세를 부과한다.

박진규 외(2018)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매립세의 도입이 매립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탄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처분부담금의 부과 형태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표 6> 폐기물처분부담금 대상 및 폐기물과 부과 요율

(단위: 원/kg)

폐기물 분류	부과 요율(원/kg)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15	10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
	가연성	10
건설폐기물	30	10

주: 1. 산정방식: 폐기물처분부담금 = 폐기물 소각·매립처분량(kg)×요율(원/kg)×산정지수
 2. 산정지수: 2018:1.000 → 2019:1.019 → 2020:1.023 → 2021:1.024
 출처: 한국환경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사를 통해 추정된 수요에 기초해 본다면 매립-재활용 교차 탄력성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0.0041~0.4206 정도로 비탄력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매립세의 도입이 매립 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박진규 외(2018)에 의하면 1990년 후반 및 2000년도에 매립세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의 자료에 기초해 보았을 때 매립세가 도입된 초기에는 매립세율의 크기에 상관없이 매립행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매립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지 않아서 매립세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립을 줄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탄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처분부담금의 부과 형태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박진규 외(2018)는 EU 회원국들이 매립세율을 계속적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 행태가 변한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2000년 초반까지 매립률이 8% 수준이었는데 2000년에 매립세를 1톤당 13유로에서 65유로로 올리고 2003년에 79유로로 증가시키면서 매립율은 2.7%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도 2007년 1톤당 24파운드였던 매립세를 2014년 80파운드에 이를 때까지 매년 8파운드씩 증가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는 처분부담금을 꾸준히 인상하면서 장기적인 가격 시그널을 보내는 경우 경제 주체들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행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의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장기적으로 충분한 인상을 통해 경제 주체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⁶⁾ 하지만 현재 처분부담금의 평균적인 인상률은 매년 1%에 못 미치는 수준⁷⁾

6) CGE 모형을 통해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효과를 분석한 이효창 외(2020)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연평균 최소 15%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채택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각종 규제를 동시에 취해야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에서 제시하는 최종처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므로 가격 인상의 폭이 크지 않다. 이처럼 낮은 가격을 지속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행태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매립이나 소각행태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가격 시그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립세의 꾸준한 인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매립률을 낮춘 유럽의 사례를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유럽의 매립세 도입 사례는 주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것으로 재활용 기술이 더 많이 진보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유사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매립이나 소각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매립이나 소각에 대해 처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립이나 소각과 같은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시장 내에서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소각과 매립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가격체계를 설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외부비용의 내재화라는 관점보다는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목표에 충실하게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경우(예: 유해한 지정폐기물) 재활용처분부담금이 완전 면제가 된다. 이러한 폐기물들은 어차피 부담금을 책정해봐야 재활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부담금을 책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효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폐기물에 비해 더 클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기물에 대해서 더 많은 처분부담금이 책정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⁸⁾

또한 현행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는 100% 감면, 매출액 10억~120억원 사이에는 50%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낮은 경우가 많아 폐기물처분부담금이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폐기물처분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은 주체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동일한 부담금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면제를 해주는 경우 매출액이 낮은 기업보다는 폐기물 배출량이 낮은 소규모 기업 위주로 면제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의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도는 외부비용의 내재화라는 관점보다는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 목표에 충실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

7) <표 7>의 산정지수 참고
8)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접근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체코, 벨기에 왈로니아 지역, 라티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는 유해폐기물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노르웨이, 핀란드, 불가리아의 경우 유해폐기물은 면세된다(CEWEP, 2021; 이소라의, 2016).

현행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매립과 소각에 대해서 모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소각세를 폐지하여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각에 대한 처분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현행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과 소각에 대해서 모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폐기물이 재활용되기 어려워 매립이나 소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각하는 편이 매립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훨씬 낮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소각세를 폐지하여 매립보다는 소각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매립이나 소각의 외부비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박진규 외, 2018) 선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의 사례를 기초로 살펴보자면 일본의 경우 47개 자치단체에서 매립세를 부과하는 곳은 28곳이지만 소각세를 부과하는 곳은 6곳에 불과하다. 그리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서는 곳은 소각세를 도입했다가 폐지하였는데 이는 소각세의 효과가 행동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이소라 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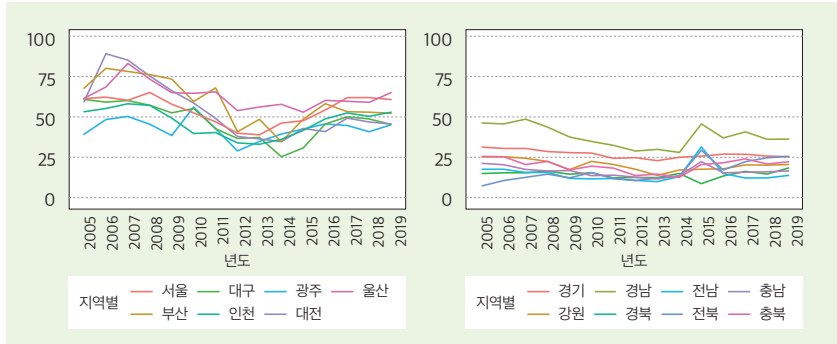
2.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경우 이미 발생된 폐기물의 처분방식에 대한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박진규, 2018; 이효창, 2020).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배출자와 폐기물 처리자가 다르고 처리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배출자가 직면하는 가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폐기물처분에 따른 처분부담금이 책정되더라도 배출자들은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적절하게 책정하는 것이 배출량 원천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 시행된 만큼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되어 있는 편이다. 대체로 쓰레기 종량제 제도는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기영(2014)에 의하면 주택 단위로 정책제로 내던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쓰레기 종량제로 변경했을 때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8.4% 감소하였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1% 증가시키면 일반쓰레기 배출량이 0.17~0.66%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윤하연·윤세미, 2020; 유기영, 2014; 이희선 외, 2013; 2018).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

[그림 9] 주민부담률 연도별 추이

(단위: %)



출처: KOSIS, 「주민부담률」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오랫동안 동결된 지자체가 많고 주민부담률은 2019년 기준 34.7%로 낮은 편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에 대한 요구는 존재하는 편이다.

이 오랫동안 동결된 지자체가 많고 주민부담률⁹⁾은 2019년 기준 34.7%로 낮은 편으로([그림 9] 참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에 대한 요구는 존재하는 편이다.

정부는 1999년에 2003년까지 일반쓰레기의 주민부담률을 100%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이 목표의 달성에 실패하자 2006년에는 주민부담률 60%를 2008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적이 있다.¹⁰⁾ 그러나 그 이후에 주민부담률에 대한 목표는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이라고 방향을 제시한 상황이다.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가 주민들의 생활과 지방재정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시행지침에 있는 다양한 쟁점사항들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수수료의 책정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은 폐기물 원천 저감을 위한 수수료의 가격 시그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량제 봉투의 적정가격에 대한 원칙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량제 봉투 적정가격에 대한 논의는 주로 주민부담률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부담률이 100%, 즉 총수입이 총비용과 같아지는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제시하는 주장이 있다(양준석 외, 2020). 하지만 시장에서의 최적 배분을 위한

9)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 ‘주민부담률’ 현실화 추진계획 (환경부, 2006)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쓰레기 처리의
한계비용에
외부효과의 합으로
책정하는 것을
적정가격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을 논의할 때는 총비용의 관점보다는 한계비용(=공급곡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쓰레기 처리의 한계비용에 외부효과의 합으로 책정하는 것을 적정가격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¹¹⁾

쓰레기 처리의 한계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한계비용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는 평균변동비와 한계비용이 같으므로 평균변동비 부분을 한계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에 외부비용을 추가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로서 폐기물 배출의 외부비용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외부비용의 책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 금액이 외부비용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만큼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처분부담금 인상분이 발생하면 쓰레기 봉투 가격도 자연스럽게 인상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3.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재활용 시장은 근본적으로 시장의 실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OECD(2006)는 재활용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장실패의 요인들을 제시하였는데 대표적인 요인으로 탐색비용, 거래비용, 그리고 정보의 실패를 제시하였다. 재활용 원료들은 그 품질과 성상에 따라서 모두가 이질적인 상품이므로 구매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찾는 데 탐색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설령 구매자와 판매자가 탐색과정을 거쳐서 서로 만났다고 할지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구매자는 재활용 원료에 대한 품질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므로 가격 협상에 있어서 상호합의에 이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재활용 원료는 그 공급이나 수요 자체가 불규칙적이고 장기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시장에서의 거래는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효율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이 작은 규모의 기업들로 구성되었을 때 더욱 심해지는데(OECD, 2003; 2006) 국내의 재활용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장실패의 문제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¹²⁾

11) 한계비용만 고려하는 경우 시설 설치비용과 같은 고정비를 쓰레기봉투 가격 책정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주민부담률은 100% 이하가 될 수 있다. 주민부담률이 100%가 이하가 되는 것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청소 분야와 유사한 공공사업 분야 중 주민부담률이 100% 이하인 사업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19년 기준 78.2%이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7.9%이다(환경부, 2021; 2020b).

12) 2019년 기준 전체 허가 및 신고 재활용업체 수는 약 6,557개로 종업원 수 5인 이하의 업체 비율이 과반수(54.8%) 이상이며 10인 이하 업체 비율은 74.6%에 달한다. 또한 총 매출액 1억 미만인 업체가 전체 재활용업체의 59.2%에 달하는 등 재활용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한 수준이다(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이러한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재활용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정보의 제공자가 되는 것이다. 재활용 원료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시의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자신이 필요한 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재활용 시장에 진출 여부를 고려하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또한 재생원료를 이용해 만들어진 제품들에 환경 표지를 부착하여 재생원료제품을 구매하기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재생원료를 표준화하여 이질성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재생원료의 품질 기준을 표준화하고 등급을 적용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상호간의 거래를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재생원료로 만들어진 제품들도 안정성과 같은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큰 재생원료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수거시설의 광역화, 대형화를 통해 재생원료의 꾸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공공조달이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부과와 같은 정책으로 꾸준한 재활용 원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재활용 시장은 근본적으로 시장의 실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재활용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V. 맺음말


선형경제 구조하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자원소비 및 환경파괴와 같은 문제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은 최근 10여년간 많은 국가와 기업 그리고 학계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국내 순환경제의 최근 정책환경 변화와 재정투자 및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경제적 유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내의 경우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포장재 폐기물이 증가하는 등 6년 연속 1인당 생활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립지는 포화되고 있어서 폐기물의 원천 저감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재활용 시장의 침체로 인해 그 기능이 저하되어 폐기물 수거 안정성이 저해되고 폐기물의 불법 방치 유인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재활용품 비축 사업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최근에 도입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시행하

재활용 시장은 모든 상품이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 주체들의 행태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고 있는 매립세와 유사한 형태의 규제로서 경제적 유인을 통한 행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유럽의 사례나 환경부(2015)의 매립-재활용 교차탄력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단기적인 행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주체들의 행태 변화가 탄력적일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꾸준하고 유의미한 가격 시그널을 통해서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일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처분에 부담하는 가격 시그널이 배출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적절히 책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재활용 시장은 시장실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실패의 요소들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재활용 시장은 모든 상품이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재활용 원료에 대한 표준화 및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재활용 시장에서 꾸준한 수요와 공급을 창출함으로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영재·장용철, 「건설폐기물의 물질흐름분석을 통한 실질 재활용률 산정 연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제33권, 제5호, 2016, pp. 483-491.

고의석·심원철·이학래·강육건·신지현·권오철·김재능, 「국내 포장 폐기물에 따른 재질별 재활용 공정 현황 및 재활용 문제점」, 『한국포장학회지』, 제24권 제2호, 2018, pp. 65-71.

관계부처 합동,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2018.

김경민,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기준비용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제17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김은아·민보경, 『지역순환경제 전략 체계 및 사례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2020.

박상우, 「도시폐기물의 처분 및 소각에너지 회수 동향: OECD 회원국 중심으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제34권 제1호, 2017, pp. 1-12.

- _____,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과 폐기물관리: EU의 순환경제 정책 동향」, 『한국 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제36권 제3호, 2019, pp. 201~216.
- 박진규·김란희·이남훈, 「자원순환기본법에서의 매립처분부담금이 폐기물매립지 에미치는 영향 고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제35권 제4호, 2018, pp. 287~296.
- 양인목·김영실·안중우·조봉규·조영주, 「재활용 기술에 대한 환경, 경제효율성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전과정평가학회지』, 제14권 제1호, 2013, pp. 85~95.
- 양준석, 『생활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개선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2020.
- 유기영, 『2014 서울시 폐기물 관리체계 A에서 Z까지』, 서울연구원, 2014.
- 윤하연·윤세미,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방안』, 인천연구원, 2020.
- 이상훈, 「국내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현황」, 『자원리사이클링』, 제28권 제6호, 2019, pp. 3~8.
- 이선화, 「불법폐기물 발생 원인과 처리 방향」, 『이슈브리프』, KDB미래전략연구소, 2019. 5. 20.
- 이소라·이창훈·이희선·주현수·조지혜·황인창·박효준,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부담금 운영방안 마련 연구 II』, 한국환경연구원, 2016.
- 이희선·신경희·조공장·한상운·금현·양은모, 『종량제 생활폐기물 처리의 배출자 부담원칙 확대 적용 방안』, 한국환경연구원, 2013.
- 이희선·이소라·이우진·권문선·이기민, 『전국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균등화를 위한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2018.
-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추진계획」, 2020.
- 장지인, 「에코효율성 (Eco-efficiency) 제고를 위한 물질흐름원가회계 기법의 활용방안」, 『국제회계연구』, 19, 2007, pp. 39~58.
- 조지혜·주문술·신동원·고인철, 『순환경제 이행 진단을 위한 통합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구축』, 한국환경연구원, 2020.
- 조지혜·주문술·신동원·고인철, 「순환경제 이행 진단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2021.
-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주민부담율’ 현실화 추진계획」, 2006.
- _____,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부담금 운영방안 마련 연구 I」, 2015.
- _____, 「순환자원 인정제도 해설서」, 2017.

_____, 「포장의 환경성 높은 한국산업표준 8종 제정(2018-11-28)」, 2018a.

_____,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해설서, 2018b.

_____, 「정부,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120만톤 신속한 처리 착수」, 2019.

_____, 「폐기물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 없앤다, “발생부터 처리까지”종합적으로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수립」, 2020a.

_____, 「2019하수도 통계」, 2020b.

_____, 「2019상수도 통계」, 2021.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19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0.

KOISIS(국가통계포털),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entId=T.1;T_23.2;&outLink=Y#T_23.2, 최종 검색일자: 2021. 10. 7.

_____, 「주민부담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26_0200005, 최종 검색일자: 2021. 10. 7.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https://www.keco.or.kr/kr/business/resource/communityid/195//view.do?p=10&idx=129&f=1&q=>, 최종 검색일자: 2021. 10. 14.

CEWEP, “Landfill Taxes and Bans,” 2021.

Ellen Macarthur Foundation, “Completing the Picture: How the Circular Economy Tackles Climate Change,” 2019.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owards a circular economy-A zero waste programme for Europe,” 2014.

_____,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Closing the loop-An EU action plan for the Circular Economy,” 2015.

- _____,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2017.
- _____,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For a cleaner and more competitive Europe,” 2020.
- EU Directive 2019/904,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 Geissdoerfer, M., M. P. Pieroni, D. C. Pigosso, and K. Soufani, “Circular business models: A review,”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277, 2020.
- Ghisellini, Patrizia, Catia Cialani, and Sergio Ulgiati. “A review on circular economy: the expected transition to a balanced interplay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system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14, 2016, pp. 11~32.
- Merli, Roberto, Michele Preziosi, and Alessia Acampora. “How do scholars approach the circular economy?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78, 2018, pp. 703~722.
- OECD,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Policy Issues and Challenges*, 2003.
- _____, *Improving Recycling Markets*, 2006.
- _____, Municipal waste (indicator), 2021. doi: 10.1787/89d5679a-en (Accessed on 08 August 2021)
- _____, *Environment at a Glance 2020*, OECD Publishing, Paris, 2020. <https://doi.org/10.1787/4ea7d35f-en>.
- UN, “Goal 12: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no date,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consumption-production/>, 검색일자: 2021. 8. 30.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및 논의 현황¹⁾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sjyoon@kipf.re.kr)

I. 서론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2020년 각 국가에서는 보건정책 및 가계·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였다. 또한 2021년에 들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이, 조세 및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초기의 미흡한 대응 및 취약한 공공의료시스템 등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코로나19 대응 및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위한 대규모 정책패키지가 발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조세·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및 관련 논의과정에서 부각된 쟁점들이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에 있는 “한국판 뉴딜”에 제시하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II. 미국의 코로나19 전개 및 대응

1.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전개 및 현황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2020년 1월 22일에 첫 확진자가 발

1) 본고는 윤성주(2021) 및 윤성주·구윤모(2021)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기술한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방향』(가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12.)의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생하였다. 같은 해 2월부터 해안 주(coastal states)에 위치한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였지만, 미국 정부는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코로나19 보건위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초기 대응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탁상우, 2020).

그 결과, 2021년 9월 29일 현재, 미국에서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는 전 세계 확진자 2억 3,360만 5,272명의 18.9% 수준인 4,404만 215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사망자: 71만 1,142명, 치명률: 1.6%). 인구 100만명당 발생률을 또한 13만 3,051명으로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1>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단위: 명)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발생률	133,051	113,959	107,278	50,350	13,428	6,022

출처: Corona Live, <https://coronaboard.kr/>, 검색일자: 2021. 9. 29.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큰 충격에 대응하여, 미국에서는 2020년 트럼프 행정부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러 대응책을 발표·운용하였으며, 현재 추가적인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

2.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로 경제적 타격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이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2020년에 다섯 차례에 걸친 지원책을 통해 대응하였다.

2020년 3월 6일과, 3월 18일에 각각 입법·발효된 「코로나 준비·대응 추경(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과 「코로나 대응 가족 우선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은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검사,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등과 같은 보건 분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편성되었다.

반면, 3월 27일에 입법·발효된 「코로나 지원·구호·경제보장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은 미국 역사상 단일 법안으로는 가장 큰 2조 2천억달러 규모로 편성되었다. 당시 상원을 장악했던 공화당이 주도하고,

미국에서는
코로나19의 큰 충격에
대응하여 2020년
트럼프 행정부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러 대응책을
발표·운용하였으며,
현재 추가적인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CARES Act에서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지원정책의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국 구조계획법(ARP)」 등에 포함되어 확대·연장되는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하원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초당적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가계와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4월 23일과 12월 27일에 입법·발효된 「급여·의료 지원법(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과 「코로나 대응 구호·추경(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은 앞서 입법·발효된 CARES Act에서의 주요 정책을 추가·연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표 2>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법안(2020년)

코로나 준비·대응 추경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코로나 대응 가족우선법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코로나 지원·구호·경제보장법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	급여·의료 지원법 (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	코로나 대응·구호 추경 (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 3. 6.	2020. 3. 18.	2020. 3. 27.	2020. 4. 23.	2020. 12. 27.
83억달러	1,920억달러	2.2조달러	4,830억달러	9,200억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지출 중심 • 소규모 추경세출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생계지원 •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검사 • 고용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EIP¹⁾ • 실업급여 • 중소기업 PPP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PPP²⁾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EIP¹⁾ • 실업급여 연장

주: 1) EIP: 경제부양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
 2) PPP: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출처: 윤성주(2021)

트럼프 행정부 CARES Act에서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지원정책의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국 구조계획법(ARP)」 등에 포함되어 확대·연장되는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 중 가계지원 정책으로는 경제부양지원금과 실업급여 확대 등이 있다. 경제부양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 EIP)은 세금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부부합산 2,400달러)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조정 총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이 7만 5천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 100당 5달러씩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7세 미만의 부양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500달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실업급여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였다. 첫째, 금액 측면에서는, ‘연방팬데믹실업수당(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FPUC)’을 도입하여, 일반적인 실업수당에 연방정부가 매주 600달러를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둘째, 대상 측면에서는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임시적으로 ‘팬데믹 실업수당(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지급기간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은 26주 동안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보건위기 동안 추가적으로 13주 동안 실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EUC)’을 통해 지급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리고 CARES Act에서의 주요 정책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고용유지를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이 있다.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은 코로나19 위기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지만, 대출자인 기업이 8주 동안 임금, 가족돌봄휴가, 병가 등 급여 관련 항목에 대해 지출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III.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1. 배경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2009년 10월에는 실업률이 1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2월에는 3.5% 수준까지 낮아졌으나, 코로나19 위기 초기인 2020년 4월, 14.7%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21년 들어서는 6% 내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가 미국 실업률에 미친 영향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코로나19 이전 실업률과 코로나19 위기와과정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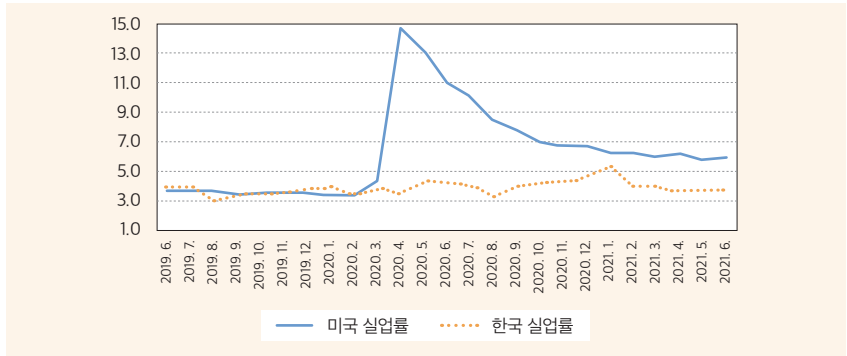
**실업급여의 경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금액, 대상,
지급기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였다.**

2) 2020년 2월 실업률 수치는 최근 50년 중(1969년 이후) 최저치(3.5%)를 기록하는 경제적 호황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 실업률은 1948년 데이터 구축 이후 역대 최고치인 14.7%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은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주요 국가 정부가 코로나19 초기에 고용 유지 정책에 방점을 둔 반면,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에서는 대량 해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가 대다수 국민에 대한 현금지원과 실업급여 강화를 통해 대응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 미국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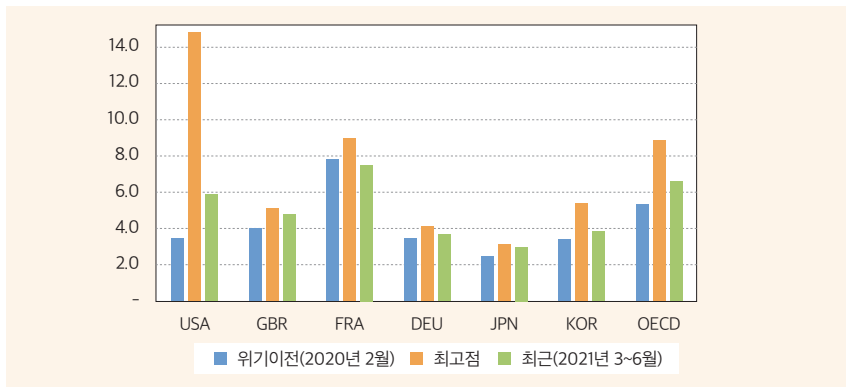
(단위: %)



주: 계절조정
출처: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국 통계청(KOSI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 코로나19 위기가 주요국 실업률에 미친 영향

(단위: %p)



출처: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21. 7. 7.

최고 실업률 간의 차이가 OECD 국가들의 평균인 3.5%p인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11.3%p 수준으로 매우 높음을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초기에 고용을 유지하는 정책에 방점을 둔 반면,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에서는 대량 해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가 대다수 국민에 대한 현금지원과 실업급여 강화를 통해 대응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한국은행, 2020).

2. 주요 정책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바이든 당시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감면 정책을 무효화하고,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을 달성하는 조세·재정 정책을 제시하였으며(최인혁, 2020),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세 가지 정책패키지를 발표하였다.

가.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ARP)

2021년 1월에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3월 11일에 1조 8천억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법(ARP)」(이하 「구조계획법(ARP)」)이 발효되었다. 「구조계획법(ARP)」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취약계층 구제 및 경제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내용 가운데 사회안전망 강화, 빈곤 방지와 같은 사회보장 측면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2020년 3월과 12월에 이은 세 번째 경제부양지원금, 실업수당 연장, 한시적 대규모 세액공제 및 주·지방정부·교육기관 지원 등이 주요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다. 3차 경제부양지원금은 1인당 최대 1,400달러로, 1·2차 때보다 지원액이 증가했으나,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소득 상한이 기존보다 낮은 8만달러로 설정되었다. 즉, 3차 긴급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지원액은 인상된 반면, 수급요건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업수당과 관련해서는 연방팬데믹실업수당(FPUC)의 경우, 법안발의 시점에는 주당 400달러를 계획하였지만, 법안 논의과정에서 금액을 30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지급기한을 계획보다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프리랜서 등에 적용되는 팬데믹 실업수당(PUA)과 수급기간을 확대하는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PEUC)이 「구조계획법(ARP)」에서 연장되었다.

조세 측면에서는 2021년 과세기간 동안에 아동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EITC), 부양가족 세액공제, 보육비용 소득공제 등을 통해 개인과 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아동세액공제의 경우, 대상을 17세 미만에서 17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1.5배가량 확대하였고, 부양가족 세액공제와 보육비용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공제액을 각각 4배, 2배 정도 인상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1조 8천억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법(ARP)」이 발효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구제 및 경제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가운데 사회안전망 강화, 빈곤 방지와 같은 사회보장 측면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

3차 경제부양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지원액은 인상된 반면, 수급 요건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 측면에서는 2021년 과세기간 동안에 아동세액공제, 무자녀 근로장려세제, 부양가족 세액공제, 보육비용 소득공제 등을 통해 개인과 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표 3> 「미국 구조계획법(ARP)」 주요 재정정책

분야	주요 내용
경제부양지원금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최대 \$1,400 (1차 \$1,200, 2차 \$600), 미국 가정의 85% 수혜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지 않음(1차에서는 구분) 개인 \$75,000(부부 \$150,000) 전액수급, 상한 \$80,000(\$160,000) ※ 1차: 개인 \$75,000(부부 \$150,000) 전액수급으로 동일, 상한 \$99,000(부부 \$198,000) → 3차 EIP: 금액 증가, 수급 요건 강화
실업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팬데믹실업수당(FPUC) \$400/week을 계획했으나, 금액을 \$300/week로 낮추는 대신, 지급기한을 기존 계획(~2021. 8. 29.)보다 연장(~2021. 9. 6.) 팬데믹긴급실업수당(PEUC)과 팬데믹실업수당(PUA) 지급기간 추가 연장(~2021. 9. 4.)
중소기업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긴급경제자금융자(EIDL) 지속 지원

출처: 윤성주(2021)

<표 4> 「미국 구조계획법(ARP)」 주요 조세정책

	지원	주요 내용
개인	아동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세 미만 아동에 대해 최대 \$2,000를 적용하던 세액공제금액을 6세 미만 1인당 최대 \$3,600, 6~17세 이하 1인당 최대 \$3,000까지 인상 - 소득 기준, 개인 \$75,000 미만, 부부 \$150,000 미만이 대상, 그 이상의 경우 credit 금액이 점차 줄어들어, 1인 \$90,000, 부부 \$170,000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자녀수에 제한 없으며,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tax credit 전액을 현금지급
	무자녀 근로장려세제 (EI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연령·세액공제 산출식을 수정하여 무자녀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적용액을 \$543에서 \$1,502까지 확대
	부양가족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을 확대하여 비용 및 소득에 따른 최대 공제액을 \$2,100에서 \$8,000로 인상하고, 환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보육비용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 납세자의 보육 관련 비용의 최대 소득공제액을 \$5,000에서 \$10,500로 인상
	공적부조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 부조 공제(Premium Tax Credit: PTC) 관련, 2021년과 2022년에는 빈곤 소득 기준 400% 이하의 소득 상한액 요건을 폐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2~9.5%였던 납부요율 역시 한시적으로 0~8.5%로 완화
	학자금대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 12. 31. ~2026. 1. 1. 사이에 실행된 중등 과정 이후 학자금 대출은 총소득에서 제외
사업자·고용주	급여세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급병가·유급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고용주 급여세 공제를 2021. 9. 30.까지 연장
	고용유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 6. 30. ~ 12. 31.까지 고용유지 세액공제 확대 - 2020. 2. 15일 이후 설립된 연수입 \$1,000,000 이하 스타트업기업은 공제액 이 분기당 최대 \$10,000에서 \$50,000로 인상 - 2019년 동일 분기수입의 10% 미만의 수입이 발생하는 고용주의 경우, 세액 공제금액을 결정할 때 모든 임금을 적격임금으로 처리
	과세 대상 소득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통해 지급된 환급이 필요하지 않은 선지급금과 레스토랑 활성화기금의 추가 보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과세 대상 총소득에서 제외
기타	외국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 한도액 산출 시 미국 및 해외 소득의 공제 배분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지급한 이자비용을 포함하도록 한 내국세법(Section 864) 조항 폐지
	제3자 결제기관 거래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 결제기관(카드사, 전자결제시스템 등)의 경우, 수취인의 거래신고의 무 기준을 기존의 연간 \$20,000에서 2022년부터 연간 \$600로 강화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재정포럼』, 2021.4~2021. 5의 내용을 표로 정리

EITC의 경우에는 무자녀 저소득층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3배가량 인상하였다. 사업자·고용주에 대해서는 급여세공제와 고용유지세액공제의 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일부 선지급금과 보조금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하였다.

나. 미국 인프라계획(American Jobs Plan: AJP)

바이든 행정부는 3월 31일, 미국 구조계획(ARP)에 이어 향후 8년 동안 2조 2천억~2조 3천억달러 규모의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인프라 재건·현대화, 기후변화 대응,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국과의 경쟁 우위 구축 등과 같은 물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인종 간 격차 완화 등을 목표로 교육과 보육·돌봄과 같은 인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표 5> 미국 인프라계획(AJP) 규모(추정치)

정책 구분	비용규모
운송 인프라(인프라 복원력 개선 \$500억)	\$6,210억
청정 에너지 인프라	\$3,110억
교육/보육 및 주택 인프라	\$3,780억
제조업 및 R&D 인프라	\$5,800억
돌봄 인프라	\$4,000억
정책 지출규모	\$2.2~2.3조

출처: White House,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 2021. 3. 31.; 윤성주·구윤모(2021) 재인용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인프라계획(AJP)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으로 법인세 개혁방안(The Made in America Tax Plan)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15년 안에 인프라 관련 비용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서 21%로 대폭 인하되었던 법인세율을, 28%로 일부 환원하는 계획과, 대기업이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장부상 이익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얻는 수익에 부과하는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은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국과의 경쟁 우위 구축 등과 같은 물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인종 간 격차 완화 등을 목표로 교육과 보육·돌봄과 같은 인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인프라계획 (AJP)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으로 법인세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15년 안에 인프라 관련 비용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6> 미국 인프라계획(AJP) 주요 조세정책

구분		TCJA 이전	TCJA	AJP(안)			
법인	법인세율	15~35% 누진세율(4단계)	21% 단일세율	28% 단일세율			
	대기업 최저한세		-	회계이익의 15%			
국제	GILTI	실효세율(공제)	-	GILTI	10.5~13.25% 실효세율	21% 최저실효세율	
		소득면제			국외자산의 10% 소득면제		국외자산의 10% 소득면제 폐지
		산정 기준			전 세계 통산		국가별 통산
	FDII(공제)	-	FDII 도입	FDII 폐지			
	BEAT(비용부인)	-	BEAT 도입	BEAT 폐지, SHIELD 신설·대체			

주: 1. TCJA: Tax Cuts and Jobs Acts;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2018~2025년)
 2. GILTI Tax: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얻은 무형자산 관련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3. FDII 공제: 미국기업이 해외 수출소득에서 무형자산 부분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허용하는 제도
 4. BEAT Tax: 미국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지불하는 공제가능한 비용을 제한하는 세원잠식·남용방지 세제
 출처: 정훈(2021)

3) 세원잠식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세제 개혁에서 도입되었으나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새로운 제도인 SHIELD(Stopping Harmful Inversions and Ending Low-tax Developments)를 신설하여 다국적기업 본사가 해외에 있는 자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의 세금공제를 중단하여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체제를 구축하고, 절세 목적으로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행태를 제재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이정민, 2021).

4) 3월 말에 발표된 인프라계획(AJP)은 이후 규모, 재원 등이 조정되어 법안이 마련되는 등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3. 법안 관련 주요 논의 및 진행 현황"에서 살펴본다.

Income) 세율을 현재의 2배 수준인 21%로 인상하고, 국가별 통산방식을 통해 기업들의 세원잠식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해외 유형자산 수익에 대한 면세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수출 소득과 관련하여 높은 공제율을 허용하고 있는 FDII(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를 폐지하는 방안이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다. 비용처리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도입한 세원잠식·남용방지세 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를 폐지하고, 좀 더 강화된 수준의 SHIELD(Stopping Harmful Inversions and Ending Low-tax Developments)를 새롭게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³⁾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국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화석연료 산업에 부여되어온 보조금과 각종 세금공제를 폐지하는 방안 또한 제안하고 있다. 즉, 석유·가스 생산업체에 적용하던 특별 외국 세액공제와 프로젝트 초기 시추비용에 대한 공제 등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확보되는 세수는 공해방지 사업을 위한 슈퍼펀드(Superfund)에 불입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⁴⁾

다.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 AFP)

3월 말에 발표된 2조 2천억달러 규모의 ‘인프라계획(ARP)’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4월 28일,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향후 10년 동안 1조 8천억달러 규모의 ‘가족계획(AFP)’을 발표하였다.

‘가족계획(AFP)’은 교육(5,060억달러), 가정 및 아동(4,950억달러), 각종 세액 공제 연장(8,550억달러) 등 가족 지원 중심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가정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증대, 보육에 대한 부담 완화, 아동빈곤 감소, 자녀세대 및 가정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미국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의 수혜가 모두에게 확대·공유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중간소득 가구의 경우 보육비용이 가구소득의 7%를 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교육, 보육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재정지출계획과 함께, 3월에 입법 발효된 「구조계획법(ARP)」의 주요 세금공제를 연장 또는 영구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계획(AFP) 지출에 대한 재원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⁵⁾ 즉, 고소득층 세금 인상, 과세제도 정비·강화 등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1조 5천억달러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재 37%에서 트럼프 정부 이전 수준인 39.6%로 인상하고, 고소

가족계획(AFP)은 가족 지원 중심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의 수혜가 모두에게 확대·공유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7> 미국 가족계획(AFP) 주요 재정·조세감면 정책

분야	주요 내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 무상교육 확대, Community College 학비 무료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Pell Grants) 확대
가족·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 유급 가족돌봄휴가 및 유급병가 프로그램 도입 취약계층 지원, 보육료 부담 완화, 다양한 보육 옵션 제공, 양질의 보육 인프라 투자 및 보육서비스 제공자 훈련
영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 동안의 학생 대상 가정식료품 지원(EBT) 확대
세금감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구조계획(ARP)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를 2025년까지 연장(영구시행 추진)하고, 자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는 영구 도입 미국 구조계획(ARP)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아동·부양가족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를 일부 조정하여 영구 도입

출처: White House, “Fact Sheet: The American Families Plan,” 2021. 4. 28.; 한국은행(2021) 등을 참조하여 작성

5) 바이든 정부에서는 연소득 40만달러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가족계획(AFP)
지출에 대한 재원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표 8> 미국 가족계획(AFP) 주요 조세정책

구분	TCJA 이전	TCJA	AFP(안)
소득세율	10~39.6%	10~37%	10~39.6%
소득세율 누진구간 (단독가구 최고세율 개시구간)	\$426,700	\$500,000	\$452,700
고소득 자본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최대 20%(+3.8%)		소득세 최고세율 39.6%(+3.8%)
	일반세율 구간 연계	과세구간 별도 부여	
고액 상속·증여 자본소득세			상속·증여 시점 과세

출처: 정훈(2021)

득층⁶⁾에 적용되는 자본소득세율을 현재 20%에서 소득세율과 같이 39.6%로 인상하는 방안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액 상속·증여와 관련해서 상속·증여 시점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에 대해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계획되어 있다.⁷⁾

3. 법안 관련 주요 논의 및 진행 현황

미국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100석 가운데 60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안통과는 과반 투표이지만,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 입법 발효된 「구조계획법(ARP)」은 필리버스터를 동원할 수 없는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었다. 즉, 공화당과 민주당이 참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양당이 초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양당 의석대로 분열된 표결 결과가 나타났다.⁸⁾ 후보시절 협치를 강조했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 취임 후 첫 번째 법안을 이와 같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담이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 지지, 그리고 연준(Federal Reserve Bank: Fed)과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구조계획법(ARP)」에 대한 호의적인 메시지와 연구 내용에 힘입어,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50:49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김태근, 2021).

6) 연간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에 자본이득세율 39.6%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Households making over \$1 million—the top 0.3 percent of all households—will pay the same 39.6 percent rate on all their income, equalizing the rate paid on investment returns and wages (White House Fact Sheet: The American Families Plan, 2021. 4. 28.)

7) 4월 말에 발표된 가족계획(AFP)은 인프라계획(AJP) 수정 등과 관련하여 규모, 투자범위 등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3. 법안 관련 주요 논의 및 진행 현황”에서 살펴본다.

8) 미국 상원은 공화당 50석, 민주당 50석(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포함)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부통령이 상원의원직을 맡고 있어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 구조계획법(ARP)」에 이어 3월 말과 4월 말에 각각 발표된 ‘인프라계획(AJP)’과 ‘가족계획(AFP)’은 현재 계속 논의 중이다. 3월 말 인프라계획(AJP)이 발표된 후 공화당과 민주당은 4월과 5월에 각각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나, 모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6월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투자규모를 기존 보다 1조달러가량 하향 조정한 1조 2천억달러 규모의 수정된 인프라 투자안을 제시하였고, 또한 법인세 인상을 보류하는 대신 모든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안을 제안하며 합의를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6월 말,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1조 2천억달러 규모의 수정안에 합의하였으나, 7월 21일 상원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심사·논의를 위한 본회의 상정투표(procedural motion)가 부결되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조정·협의를 통해 8월 10일, 향후 5년간 약 1조~1조 2천억달러 규모로 수정된 인프라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⁹⁾ 따라서 수정된 인프라법안(IIJA)의 경우 마지막 하원의 표결만이 남아 있지만, 두 번째 인프라법안인 휴먼인프라법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 등으로 하원의 인프라법안(IIJA) 처리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¹⁰⁾

상원을 통과한 수정된 인프라계획법안(IIJA)은 물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존 인프라계획(AJP)보다 1조달러 이상 하향 조정된 규모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인프라 관련 두 번째 법안으로 보건·복지, 교육, 기후변화대응 분야 등을 포함한 3조 5천억달러 규모의 휴먼인프라법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대규모 휴먼인프라법안에 대해 공화당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민주당 일부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10월 들어 휴먼인프라법안의 상한규모를 당초 제시하였던 3조 5천억달러 수준에서 1조 9천억~2조 2천억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휴먼인프라법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크고, 부채한도 확대 또한 현재 두 인프라 법안과 함께 미국 의회에서 합의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수정된 인프라법안(IIJA)과 휴먼인프라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투자범위, 재원조달 방안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글로벌 최저법인세율과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애초에 21%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지난 5월 현실적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세율을 하

휴먼인프라법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크고, 부채한도 확대 또한 미국 의회에서 합의해야 하는 중요 이슈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수정된 인프라법안과 휴먼인프라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투자범위, 재원조달 방안 등과 관련하여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9) 수정된 인프라계획법안(IIJA)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미 사용 코로나19 구조자금 재배정, 암호화폐 과세수입 등을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21. 8. 11).

10) 몇 차례 표결 일정이 연기되었으며, 현재는 10월 31일로 표결 일정을 연기한 상태에 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7.)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 추경
~ 2025년 동안 총사업비
160조원 규모의
재정투자와 일자리
190.1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2021년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총사업비가 220조원,
일자리 창출 목표가
250만개로
상향 조정되었다.

향 조정하여 15%의 최저법인세율을 다시 제안하였다. 다음 달인 6월, G7 재무 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7월에는 OECD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 협의안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10월 8일에는 모든 OECD 회원국과 G20 회원국 등 136개국의 지지에 힘입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를 2023년부터 도입하는 내용이 최종 합의되었다¹¹⁾ (한국무역협회, 2021. 7. 2.; OECD, 2021. 10. 8).

IV. 한국판 뉴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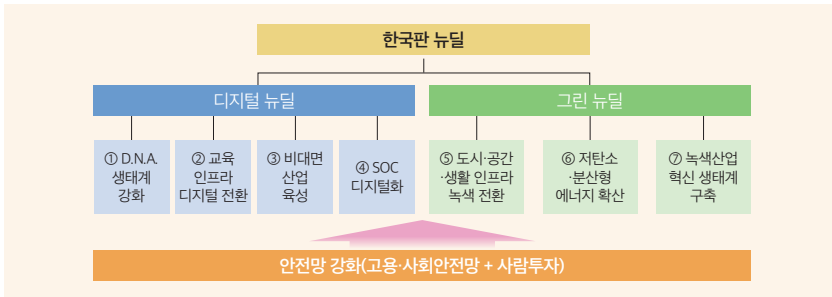
한국은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월 말과 3월 초에 대구·경북지역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협조 등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수행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저성장에 대한 우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양극화 심화, 위기과정에서 드러난 사회·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인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대응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 직면하게 될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20년 추경~2025년 동안 총사업비 160조원(국비 114.1조원, 지방비 25.2조원, 민간 20.7조원) 규모의 재정투자와 일자리 190.1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과 이를 지원하는 안전망 강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촉진과 포용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1년 7월, 정부는 기존 계획을 보완하여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신산업 육성 부문과 탄소중립 부문이 추가되었으며, 기존 계획에서 2개의 축이었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이 추가되었다. 즉, 코로나19를 겪으며 사람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불평등·격차 해소 및 청년 지원의 필요성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안전망 강화 측면을 세 번째 축인

11) 그동안 반대 입장을 취해왔던 헝가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등은 10월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으나,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4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림 3] 「한국판 뉴딜 1.0」 구조



출처: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7.

[그림 4] 「한국판 뉴딜 2.0」 구조



출처: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2.0」, 2021. 7. 14.

코로나19를 겪으며
사람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불평등·격차
해소 및 청년 지원의
필요성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판 뉴딜 1.0」의
안전망 강화 측면을
「한국판 뉴딜 2.0」의
세 번째 축인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하였다.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하였다. 투자규모 또한 2025년까지 220조원으로 기존 계획 대비 60조원 증가하였고, 직·간접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190.1만개에서 250만개로 증가하였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인프라계획(AIP)과 가족계획(AFP),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전반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또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두 국가 모두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여, 성장, 복지, 기후대응 분야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과 관련하여 한국은 미래성장 기반을 모색하며,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디지털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제조업 및 노후화된 전통 인프라 측면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확대·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두 국가 모두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된 사회·구

복지와 관련해서는 두 국가 모두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된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완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으며, 불평등 완화, 교육과 보육·돌봄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적 문제점을 완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으며, 불평등 완화, 교육과 보육·돌봄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인종 간의 갈등·격차 등을 해소하고 포용성을 강화하는 측면, 한국의 경우에는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대 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한편, 관련 투자를 미래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화석연료 산업에 제공해왔던 조세제정 지원을 폐지하고,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가속화를 계획하고 있다.

<표 9> 한국과 미국의 경제 회복·성장 정책

구분	한국	미국
계획	한국판 뉴딜→한국판 뉴딜 2.0	인프라계획(AJP)+가족계획(AFP)
규모	• 220조원 • 2020년 7월~2025년	• 인프라계획 \$2.2조/8년 • 가족계획 \$1.8조/10년
일자리	250만개	인프라 계획: 270만개/10년
성장	(디지털 뉴딜)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인프라계획) 운송인프라 개선·현대화, 제조업·공급망 지원, 대규모 투자, 초고속 통신망 구축, AI 등 신기술 R&D에 대한 대규모 투자
복지	(휴먼 뉴딜) 사람투자, 고용·사회안전망, 청년정책, 격차 해소	• (인프라계획) 구조적 불평등 및 빈곤해소 정책 측면에서 주거·보육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 (가족계획) 무상교육 확대, 보육지원, 유급휴가제도, 저소득층 세금감면 확대, 교육접근성 확대, 중산층 강화
기후대응	(그린 뉴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인프라계획) 전기차 충전소, 클린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주: 미국의 인프라계획과 가족계획의 규모, 투자범위 등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규모·범위의 축소가 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 7); 윤성주·구윤모(2021. 7.) 등을 참조하여 작성

V. 쟁점 및 시사점

1. 법안 관련 주요 쟁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후 발표한 대규모 조세·재정 지출 정책들과 관련하여 현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정책 법안과 관련해 부각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는 큰 정부로의 패러다임 변화, 즉 정부 역할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미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인프라계획(AJP)에 전통적인 물적 측면뿐 아니라 인적 측면을 포함한 것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계획(AFP) 등을 통한 복지 측면의 확대가 중산층을 강화하고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큰 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주도 정책의 효과성·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민간투자를 저해하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문에 대한 급격한 재정 확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기도 하다.¹²⁾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 실업률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 못한 것을 과도한 실업급여 혜택으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2021년 3월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머스(Lawrence H. Summers) 하버드대 교수 등은 과도한 재정지출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공화당에서는 “바이든플레이션이 임금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분이 사라지고, 미국 가족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The Newyork Times, 2021. 7. 8.; The Washington Post, 2021. 2. 4.).

바이든 행정부는 큰 정부로의 패러다임 변화, 즉 정부 역할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미국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정부주도 정책의 효과성·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12) 미국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에서는 미국 가족계획(AFP)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GDP가 0.4% 감소하고, GNP는 0.6% 하락하며, 6만 4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다(2021. 5. 6).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하는 정책들의 규모는 절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역사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 위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표 10> 미국 주요 정책규모

바이든 아젠다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1962~2020년)	오바마 케어 (10년)	Interstate Highway System ¹⁾
\$6.4 trillion	\$4.9 trillion	\$2.9 trillion	\$1.12 trillion	\$543 billion

주: 1. Inflation-adjusted 2021 Dollars
 1) cost of initial construction for 1956-1992, adjusted inflation
 출처: <https://www.heritage.org>, 검색일자: 2021. 8. 19.

반면, 옐런(Janet L. Yellen) 재무장관은 코로나19 부양책 도입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대처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백악관은 최근 급속한 가격 상승이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과는 같지 않으며, 코로나19의 영향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장기국채 금리 상승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단기에 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Bloomberg, 2021. 3. 14).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의 규모는 절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역사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 위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OECD Economic Outlook(2021)에서는 「구조계획법(ARP)」이 2021년 세계성장률을 1%p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경기부양 규모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비영리 초당파 재정기관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CRFB)는 바이든 정부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에 대한 재원조달만으로는 현재의 재정 흐름을 안정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수입창출과 함께 지출도 줄여나가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 시사점

앞서 살펴본 경제 회복·성장 정책을 위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은 「한국판 뉴딜」을 추진·운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먼저,

한국과 미국 모두 새로운 성장 및 생산성 향상에 투자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코로나19를 겪으며 드러난 사회구조적 문제점에 대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안전성 강화 측면이 휴먼 뉴딜로 확대되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며 드러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염두에 둘 때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¹³⁾

하지만 「한국판 뉴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공조 및 민간 참여 측면 등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인프라계획(AJP)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 사업예산의 미사용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는 관련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¹⁴⁾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따라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등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상당 부분은 지역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중앙-지방정부 간에 유기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국판 뉴딜 2.0」에서 지역 부분을 강화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인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중앙-지방정부 간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부재정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의 재원조달 측면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등을 제시·운영하고 있지만, 사업기간 동안의 재원조달계획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투자계획과 비교할 때, 재원 마련 측면은 상대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규모 정부지출 정책과 관련하여 재원조달방안과 재정건전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경우에는 기간별로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멀지 않은 미래에 증세가 필요

「한국판 뉴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공조 및 민간 참여 측면 등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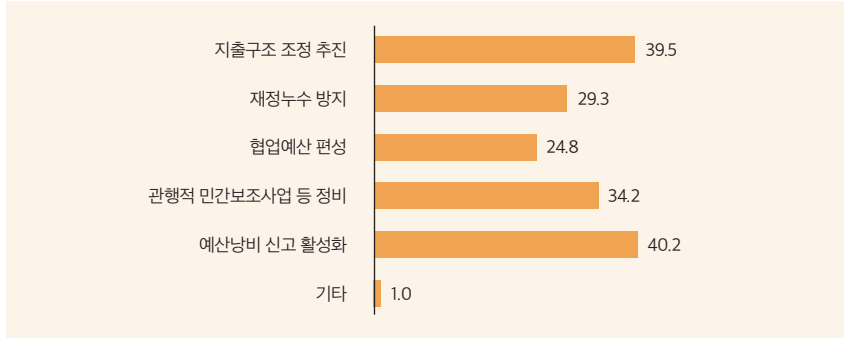
13) OECD(2021. 4.)에서는 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국가별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권고사항 중에서 사회보장 분야(사회안전망강화 및 조세제도 효율성 개선)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14) 한국판 뉴딜의 경우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 낮은 집행률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news1, 2021. 7. 19).

우리나라는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멀지 않은 미래에 증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증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중요하다.

[그림 5]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재정제도


(단위: %, 복수응답)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자료(2020. 2.)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증세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중요하다. 최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예산낭비신고제도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30세대에서 예산낭비신고의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의 발생 간격이 짧아지고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 도처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정책의 일관성 부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분명, 적절하지 못한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 따라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경우에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받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기대하는 성과도 얻기 어렵다. 이와 같은 측면을 염두에 둘 때, 특히 「한국판 뉴딜」과 같은 중기에 걸친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의 경우에는 정파를 떠난 초당적 지지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2.0」, 2021. 7. 14.

김태근,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 대응 정책(American Rescue Plan Act)의 성립 과정과 배경」,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 봄호 Vol. 16., pp. 57~66.

김현아·전병목·윤성주·송경호,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 정책방향』(가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12. (진행 중)

윤성주, 「바이든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및 시사점」,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21. 8. 25.

윤성주·구윤모, 「미국 코로나19 대응 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 센터, 2021. 7.

이정민,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국내외 법인세제 개정 계획」,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 4. 14.

정훈, 「바이든 정부 세제개편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예산춘추』, 국회예산 정책처, Vol. 63, 2021. 8., pp. 46~51.

최인혁,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정책」, 현안분석,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2., pp. 32~54.

코리아데이터워크, 『2021년 예산기금안 편성지침 작성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2.

탁상우, 「미국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제사회보장리뷰』, 여름호 Vol. 13, 2020, pp. 5~20.

한국은행,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국제경제리뷰』, 제2020-19호, 한국은행, 2020.

_____, 「바이든 대통령, 18조 달러 규모의 American Family Plan 공개」, 현지정보, 2021. 4. 2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재정포럼』, 2021.4~2021. 5.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2021: Going for Growth*, 2021. 4. 14.

_____, *Economic Outlook*, 2021.

_____, *OECD Employment Outlook*, 2021.7.

White House, “Fact Sheet: The American Families Plan,” 2021. 4. 28.

뉴스1, 「한국판 뉴딜 ‘감감’…사업 150개 상반기 집행률 10% 미만」, 2021. 7. 19.,
<https://www.news1.kr/articles/4375989>, 검색일자: 2021. 8. 23.

한국무역협회, 「OECD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130개국 서명」,
 『통상뉴스』, 통상지원센터, 무역통상정보, 2021. 7. 2.,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12190>, 검색일자: 2021. 8. 3.

한국무역협회,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미 상원 통과」, 통상뉴스, 통상지원센터,
 무역통상정보, 2021. 8. 11.,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13509&no=1&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logGb=A9400_20210812, 검색일자: 2021. 9. 15.

한국 통계청(KOSIS),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1. 8. 10.

Bloomberg(2021.3.14) Yellen Says U.S. Inflation Risk Remains Small, ‘Manageabl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3-14/yellen-says-u-s-inflation-risk-remains-small-manageable>, 검색일자: 2021. 8. 10.

OECD, “International community strikes a ground-breaking tax deal for the digital age,” 2021. 10. 8., <https://www.oecd.org/tax/international-community-strikes-a-ground-breaking-tax-deal-for-the-digital-age.htm>, 검색일자: 2021. 10. 12.

The Newyork Times, “A Great Inflation Redux? Economists Point to Big Differences,” 2021. 7. 8., <https://www.nytimes.com/2021/07/08/business/economy/inflation-redux.html>, 검색일자: 2021. 8. 10.

The Washington Post, “Opinion: The Biden stimulus is admirably ambitious. But it brings some big risk, too,” 2021. 2. 4,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1/02/04/larry-summers-biden-covid-stimulus/>, 검색일자: 2021. 8. 10.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s://www.bls.gov>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검색일자: 2021. 8. 10.

Corona Live, <https://www.corona-live.com>, 검색일자: 2021. 9. 29.

Tax Foundation, “Details and Analysis of Tax Proposals in President Biden’s American Families Plan,” 2021. 5. 6., <https://taxfoundation.org/american-families-plan/>, 검색일자: 2021. 8. 13.

The Heritage Foundation, <https://www.heritage.org>, 검색일자: 2021. 8. 19.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 FOCUS」,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이 담긴 조세개혁 패키지 승인]

- 미국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2021년 9월 15일, 증세안이 담긴 조세개혁 패키지를 승인하였음
 - 리처드 닐 미국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은 이날 고소득층의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 강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2조달러¹⁾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내용의 증세안 초안을 발표하였음
 - 확보한 세수는 바이든 정부의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임

- 세입세출위원회가 발표한 조세개혁 패키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²⁾
 - 2021년 「미국 구조계획법(ARP)」에 따른 아동 세금공제 확대를 연장함
 - 「미국 구조계획법(ARP)」에 따른 근로소득세 공제와 자녀 및 피부양자 돌봄 세금공제 확대를 영구적으로 제정함
 -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주택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금공제 프로그램을 확대함

- 건강보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 세금공제를 위한 ARP의 확장을 연장함
-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세금시스템의 진보를 위해 아래의 개혁을 추진함
 - 연소득이 40만달러 이상인 개인과 연소득 45만달러 이상의 부부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
 - 연소득 500만달러 이상의 초고소득 개인에 대한 3%p의 자산세 부과
 - 고소득자 자본이득세율은 기존 20%에서 25%로 인상
 - 수익이 연 500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1%에서 26.5%로 인상함
- 세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미국 국세청(IRS)이 부유한 개인에 대해 정교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과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투자하기로 정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나현 변호사>

[영국 - 보건사회돌봄세(HSC Levy³⁾) 도입]

- 영국 정부는 2021년 9월 8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수요에 대처하고 사회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사회돌봄세 도입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⁴⁾
 - 보건사회돌봄세는 2022년 4월부터 종업원,

1) 2021년 10월 13일 원화 환산 시 약 2,392조 6천억 원임

2) IBFD, "US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Proposes Tax Reform for Fair and Efficient Tax System,"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9-14_us_9%23tns_2021-09-14_us_9, 검색일자: 2021. 9. 17.

3) Health and Social Care Levy

4) 영국 정부, Health and Social Care Levy, Policy paper, 2021. 9. 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ealth-and-social-care-levy/health-and-social-care-levy>, 검색일자: 2021. 9. 16.

고용주,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NICs)를 각각 1.25%p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부과되며, 2023년 4월부터는 별도의 세목으로 분리 예정임

- 국민연금 수급연령(state pension age) 이상인 고령의 근로소득자는 현재 국민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지만, 2023년 4월부터는 보건사회돌봄세(1.25%)를 부담하게 됨
- 한편, 고소득층으로부터도 보건사회돌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배당소득세율을 2022년 4월부터 1.25%p 인상⁵⁾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차기 재정법안(Finance Bill)에 반영할 예정임

- 영국 정부는 연간 세수 증가액을 보건사회돌봄세 약 132억파운드,⁶⁾ 배당소득세 약 6억파운드⁷⁾로 예상하였고, 이는 영국 국민들의 돌봄비용 보조에 사용될 예정임⁸⁾
- 2023년 10월 이후, 1인당 평생(lifetime) 돌봄비용이 8만 6천파운드⁹⁾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됨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동 조치가 올바르고, 합리적이며, 공평한 접근방식(right, reasonable and fair approach)이라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임¹⁰⁾

- 비용부담을 기업과 안분하기 위해 소득세가 아닌 국민보험료를 기초로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함
- 배당세 인상을 통해 부유한 사업주(better-off business owners)나 투자자들이 공평하게 기여(fair contributions)하게 했고, 보건사회돌봄세 세수의 절반은 소득 상위 14%가 부담하게 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정명 회계사>

[프랑스 - 2022년도 예산안 발표]

- 프랑스 정부는 2021년 9월 22일, 2022년도 예산안(Projet de loi de finance pour 2022)을 발표함¹¹⁾
- 주요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조세일반법」의 해당 규정을 수정함

5) 영국의 배당세율은 2021년 현재 7.5%~32.5%~38.1%의 누진세 구조이며, 동 누진세율을 2022년 4월부터 8.75%~33.75%~39.35%로 인상할 예정임 (Which, "Dividend tax rates to rise in 2022: what does this mean for investors?," 2021. 9. 8., <https://www.which.co.uk/news/2021/09/dividend-tax-rates-to-rise-in-2022-what-does-this-mean-for-investors/>, 검색일자: 2021. 9. 16)

6) 2021년 9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조원

7) 2021년 9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원임

8) 영국 하원 도서관, "Health and Social Care Levy, Research Briefing," 2021. 9. 14.,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dp-2021-0139/>, 검색일자: 2021. 9. 16.

9) 2021년 9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천만원임

10) 영국 하원 도서관, "Health and Social Care Levy, Research Briefing," 2021. 9. 14.,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dp-2021-0139/>, 검색일자: 2021. 9. 16.

11) IBFD, "Government Presents Finance Bill for 2022," 2021. 9.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9-22_fr_1.html, 검색일자: 2021. 9. 23.;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2,"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2-plf#>, 검색일자: 2021. 9. 23.



<표 1> 2021~2022년 프랑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동

(단위: %)

2021년	2022년	세율	2021년	2022년	세율
1,420유로 미만	1,440유로 미만	0	3,104 ~ 3,494유로	3,147 ~ 3,543유로	11.9
1,420 ~ 1,475유로 ¹⁾	1,440 ~ 1,496유로	0.5	3,494 ~ 4,077유로	3,543 ~ 4,134유로	13.8
1,475 ~ 1,570유로	1,496 ~ 1,592유로	1.3	4,077 ~ 4,888유로	4,134 ~ 4,956유로	15.8
1,570 ~ 1,676유로	1,592 ~ 1,699유로	2.1	4,888 ~ 6,116유로	4,956 ~ 6,202유로	17.9
1,676 ~ 1,791유로	1,699 ~ 1,816유로	2.9	6,116 ~ 7,640유로	6,202 ~ 7,747유로	20
1,791 ~ 1,887유로	1,816 ~ 1,913유로	3.5	7,640 ~ 10,604유로	7,747 ~ 10,752유로	24
1,887 ~ 2,012유로	1,913 ~ 2,040유로	4.1	10,604 ~ 14,362유로	10,752 ~ 14,563유로	28
2,012 ~ 2,381유로	2,040 ~ 2,414유로	5.3	14,362 ~ 22,545유로	14,563 ~ 22,860유로	33
2,381 ~ 2,725유로	2,414 ~ 2,763유로	7.5	22,545 ~ 48,292유로	22,860 ~ 48,967유로	38
2,725 ~ 3,104유로	2,763 ~ 3,147유로	9.9	48,292유로 이상	48,967유로 이상	43

주: 1) 1,420유로 이상 ~ 1,475유로 미만, 이하 같음

출처: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2,"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2-plf#>, 검색일자: 2021. 9. 23.; Légifrance, "Code général des impôts,"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69577/LEGISCTA000033779948/?anchor=LEGIARTI000043662565#LEGIARTI000043662565, 검색일자: 2021. 9. 23.

● 코로나19 위기 이후 기업의 경제활동 재개 등을 고려한 조세정책을 제안함

■ 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 금액을 인상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영업권의 감가상각을 일시적으로 허용함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 금액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함¹²⁾

●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구성원이 부담하는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산업 및 상업 이익(산업, 상업 또는 수공업 등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¹³⁾ 산출 시 영업권의 감가상각액 공제를

일시적으로 허용함¹⁴⁾

- 예산안은 「상법」에서 정하는 소규모 기업¹⁵⁾이 취득한 영업권과 관련하여 사용기간 동안 또는 사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회계상 감가상각을 허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세 목적상 감가상각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확인 규정을 추가함

- 다만 예외적으로 '산업 및 상업 이익' 산출 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액의 공제를 허용함

12) 프랑스 「조세기본법」 제204H조 III-1항 a호

13)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34조 및 제35조

14)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39조

15) 프랑스 「상법」 제L123-16조

- 법인세와 관련하여 프랑스 비거주 기업에 대한 원천징수세 규정을 수정하고, 기본 법인세율을 인하함
 - 프랑스 비거주 기업이 비급여 소득¹⁶⁾에 대하여 초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총액에 부과된 원천징수액과 공제 후 순이익에 부과된 원천징수액의 차액)에 대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별 절차를 도입함¹⁷⁾
 - 일련의 프랑스 대법원 판결¹⁸⁾을 반영하고 프랑스 법을 EU 법에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비거주 기업이 최종적으로 순이익에 기초하여 원천징수 책임을 지도록 함¹⁹⁾
 - EU 또는 EEA 내에 설립된 기업에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비용 10%를 즉시 일괄공제한 후 원천징수세가 적용됨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배당소득, 로열티 및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세에 적용됨
 - ‘기본 법인세율’은 2021년 26.5%에서 2022년 25%로 인하될 예정임
 - ‘기본 법인세율’ 인하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제안되어 기존 33.33%에서 2022년 25%를 목표로 매년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왔음²⁰⁾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 조기 공제를 허용하고, 금융업 종사자의 부가가치세 선택권의 범위 규정을 완화함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기 전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에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사업자의 현금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함
 -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의 경우 재화의 인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고, 향후 재화 공급을 위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가 없음²¹⁾
 - 이와 관련한 사업자의 IT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발효됨
 - 금융업 종사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선택권 범위 규정을 완화함
 - 금융업 종사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선택권 행사 시 모든 영업활동 범위를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규정을 완화하여 영업활동 범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16) 주로 지식재산권 및 프랑스 내에서 제공되거나 사용된 모든 종류의 용역에 대하여 지불한 대가를 의미함(프랑스 「조세일반법」 제182B조)

17) 기존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 기업이 지급받은 배당소득 및 로열티는 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대부분의 경우 위 원천징수세는 적용되지 않거나 관련 조세 조약에 따라서 세율이 감감됨)가 부과되고, 반대로 거주기업은 순이익에 대하여 부과됨

18) n° 423698(22 November 2019), n° 434364(9 September 2020), n° 438135(11 May 2021)

19) KPMG, “France: Tax measures in finance bill for 2022,”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1/09/tnf-france-tax-measures-finance-bill-2022.html>, 검색일자: 2021. 10. 1.

20) IBFD, “Finance Bill for 2018 corporate taxation and VAT,” 2017. 10. 5.,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17-10-05_fr_2%23tns_2017-10-05_fr_2, 검색일자: 2021. 10. 1.

21)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269조 2-a조



- 금융업 종사자는 선택에 의해 과세 대상으로 전환 가능함(면세 포기)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벨기에 - 탄소 배출 차량 관련 녹색화 법안 발의]

■ 벨기에 정부는 2021년 9월 14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법인세 세액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함²²⁾

- 탄소 배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비용 공제는 2026년 취득 차량부터 폐지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업무용 승용차는 공제 가능하나 2027년 취득 차량부터 공제율이 경감될 예정으로, 2030년까지 유럽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임
- 법안은 차량 관련 예산의 융통성 있는 사용을 제안하고자 함
 - 차량 관련 예산은 업무용 승용차가 없는 근로자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환경 친화적인 통근을 장려하는 것임

■ 기업은 취득(리스 및 렌트의 경우도 포함)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율은 탄소 배출량에 기초하여 제한됨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유류비의 50%를 한도로 하여 공제 가능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는 100% 공제 가능함

- 탄소 배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취득시기에 따라 공제 여부를 다르게 허용하고, 공제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관련 비용의 50%를 한도로 함
 -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현재의 공제 조항이 적용됨
 -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취득한 탄소 배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2026년부터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2028년에는 공제율이 0에 이르도록 함
 -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탄소 배출 업무용 승용차는 공제되지 않음
-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 관련 비용은 100% 공제 가능함
 - 공제율은 2027년 취득 차량은 95%, 2028년 취득 차량은 90%, 2029년 취득 차량은 82.5%, 2030년 취득 차량은 75%, 2031년 취득 차량은 67.5%로 인하될 것임

■ 가정 및 공공장소에 자동차 충전소 설치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함

- 가정에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율은 기간에 따라 점차 인하될 예정임
 - 공제율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에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의 45%, 2023년에 설

22) IBFD, "Government Submits Bill "Greenifying" Tax Deductibility of Company Cars," 2021. 9.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9-16_be_1.html, 검색일자: 2021. 9. 23.; DE KAMER.BE, "PROJET DE LOI organisant le verdissement fiscal et social de la mobilite", <https://www.dekamer.be/FLWB/PDF/55/2170/55K2170001.pdf>, 검색일자: 2021. 9. 23.

치한 경우 30%, 2024년부터 1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에 설치한 경우 15%임

- 공제액수의 최대 한도는 1,500유로²³⁾임

- 공공장소에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한 경우 감가상각 공제율은 기간에 따라 점차 인하될 예정임
-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에 설치한 경우 투자비용의 200%,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에 설치한 경우 투자비용의 150%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스위스 - 주택세 관련 법 개정안 제출]

■ 스위스 연방내각은 2021년 8월 25일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주택세 관련 법 개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함²⁴⁾

- 본 개정안의 골자는 자가에 거주함으로써 절감되는 주택임대비용을 과세소득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제도인 자기임대가치(Eigenmietwert)²⁵⁾를 폐지하고 더불어 2주택자의 자가용 재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전면 수정하는 것임

- 주택세와 관련된 스위스의 기존 법²⁶⁾에서는 자가임대가치 책정에 과세의 기술적 복잡성의 문제가 산재해 있어 개혁이 필요했지만 지방자치단체(Kantone)들이 상당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좌절되어 왔음

- 주택세 개혁을 지지해오던 연방내각이 2021년 5월 27일 연방상원 경제조세위원회(WAK-S)가 발의한 「주택세법」 개정안을 개선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함²⁷⁾

■ 연방내각의 개선안은 자가용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자기임대가치의 폐지와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유지의 두 축으로 이루어짐²⁸⁾

<표 2> 연방내각과 경제조세위원회의 주요 개선안

연방내각	경제조세위원회
첫 주택뿐만 아니라 자가용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자기임대가치 또한 폐지	첫 주택에 대한 자기임대가치 폐지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유지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폐지

출처: 스위스 연방재무부, <https://www.news.admin.ch/news/message/attachments/67949.pdf>, 검색일자: 2021. 10. 12.

23) 2021년 10월 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6만원임

24) 스위스 연방재무부, "Der Bundesrat unterst tzt die Abschaffung des Eigenmietwerts," 2021. 8. 25., https://www.efd.admin.ch/efd/de/home/das-efd/nsb-news_list.msg-id-84841.html, 검색일자: 2021. 9. 24.

25) 스위스 「연방헌법」 제108조에 명시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주택 건설 및 소유 지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1934년 도입된 제도로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액이 자기임대가치보다 많아 납세자는 자가를 보유하는 것이 더 이득이었음.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 설계된 주택 소유 장려책으로 현재의 저금리 시대에는 부적합한 정책으로 평가됨

26) 스위스 직접연방세(DBG), 직접지방세조화법(StHG), 사회보장부충법(ELG), 중장년실업자지원법(ÜLG)

27) 스위스에서는 연방내각이 연방의회보다 입법 역량이 높아 연방의회가 제출하는 입법안을 지원(Eintreten)하는 역할을 하며, 입법과정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짐

28) 스위스 연방내각 개정안, "Systemwechsel bei der Wohneigentumsbesteuerung," <https://www.news.admin.ch/news/message/attachments/67949.pdf>, 검색일자: 2021. 9. 30.



- 경제조세위원회안에서는 첫 주택에 대한 자가임대가치 폐지와 이로 인해 예상되는 급격한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폐지를 제안하였음
- 연방내각에서는 첫 주택뿐만 아니라 자가용 두 번째 부동산(selbstgenutzte Zweitliegenschaften)에 대해서도 자가임대가치를 폐지하는 것과 국민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를 과세 대상 재산이익의 70% 한도 내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경제조세위원회안을 수정함
 - 연방내각 입법자료에 따르면 자가용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자가임대가치 적용은 국내 학계 여론²⁹⁾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자가용 재산(Eigennutzung ertragloser Vermögenswerte)으로 수정하면 이에 대한 자가임대가치를 폐지할 수 있다고 제안함
 - 대출이자공제의 폐지는 국민의 주택 소유를 장려하는 헌법의 의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임대주택거주자에게 대출이자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임대업자인 다주택보유자에 한하여 이를 유지보수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공제 폐지 원안을 수정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진수 연구원>

[스페인 -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추가 조세 조치 시행]

- 스페인 정부는 2021년 9월 14일, 에너지 수급에 취약한 소비자를 위해 전기 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세율을 인하함³⁰⁾
- 2021년 6월 24일 Royal decree Law 12/2021에서 시행된 조치에서 좀 더 강화하여 2021년 9월 14일의 Royal Decree Law 17/2021로 개정되었으며,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됨
- 전력 생산에 대한 세금(Impuesto sobre el Valor de la Producción de la Energía Eléctrica: IVPEE)이 2021년 4분기까지 면제됨
- 기존에는 2021년 3분기까지 면제 대상이었음
- 전기 공급에 적용되는 전기세(Impuesto Especial sobre la Electricidad: IEE)가 2021년 9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0.5%로 한시적으로 감면됨
- 세율은 5.11269632%에서 0.5%로 인하되었으며, 감면금액은 전기세 청구서의 부가가치세 과세금액에 따라 계산됨
- 단, 전기세 청구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0.5%의 세율을 적용한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29) 조세법의 권위자인 스위스 취리히대학 René Matteotti 교수는 2019년 5월 10일 발표된 단편 보고서에서 등분상 거주지에서 실거주 중인 거주용 재산과 자가 사용 중인 두 번째 부동산 간의 차별이 조세법의 제도적 정당성 원칙에 위배되며 납세자의 의사결정중립성(Entscheidungsneutralität)과 긴장관계(Spannungsverhältnis)에 있다고 주장함

30) IBFD, "Government Implements Additional Tax Measures to Cut Down Prices of Electricity," 2021. 8.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9-15_es_1.html, 검색일자: 2021. 9. 23.

아래의 에너지과세지침(2003/96)에서 요구하는 최저 세율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세금액보다 낮을 수 없음

- 업무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의 경우 1MWh당 0.5유로³¹⁾
- 비업무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의 경우 1MWh당 1.0유로³²⁾

<자료수집 및 조사: 김다람 관세사>

[스웨덴 - 2022년 예산안 발표]

- 스웨덴 정부는 2021년 9월 20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력을 완화하고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함³³⁾
 - 개인소득세는 추가 세금 감면 규정 도입 등 조세 혜택을 그 내용으로 하고, 결손법인 인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일부 제한, 비거주자 대상 배당소득에 대한 새로운 원천징수제도 도입 및 주류와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는 등의 정책도 포함
 - 예산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법인세) 소유권 변경 이후 미공제 이월결손금의 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이 도입되어 2022년 5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음
 - 소유권 변경의 주된 사유가 이월결손금 활용을 위한 법인의 인수 등과 같은 조세 목적상의 이유로 이루어진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소득세) 각종 세금 감면 규정이 새롭게 추가 도입될 예정이며,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혜택은 축소될 예정임
 -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회보험혜택 등과 관련된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함
 - 실업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 자전거 혜택(Cykelförmån)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를 추가 도입함
 -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전거 대여 등의 혜택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 연간 3천크로나³⁴⁾를 한도로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³⁵⁾

31) 2021년 9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693원임

32) 2021년 9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1,386원임

33) News IBFD, "Swedish Budget Bill for 2022 Promises Tax Cuts and New Withholding Tax Law on Dividends to Non-residents Details," 2021. 9.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9-23_se_1.html, 검색일자: 2021. 9. 24.

34) 2021년 10월 12일 원화 환산 시 약 41만원임

35) 스웨덴 정부, "Skattelättnad för cykelförmån och skattefri uthyrning av personliga tillgångar," 2021. 9. 17.,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lagratsremiss/2021/09/skattelattnad-for-cykelforman-och-skattefri-uthyrning-av-personliga-tillgangar/>, 검색일자: 2021. 10. 12.



- 2022년 7월 1일부터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 혜택이 축소될 예정임
- 2022년 6월 1일부터 R&D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9세에서 23세 사이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분담금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확대될 예정임
 - 세부적으로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변경된 조항이 적용됨
- 직원의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이 확대 및 간소화될 예정임
- 취업 알선 장소에 대한 규정이 간소화됨
 - 임시 고용인 및 파견근로자와 관련된 비용은 고용 및 파견이 최대 1개월 동안 지속되고 집과 직장 사이의 거리가 50분 이상인 경우의 출장 경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제됨

- (자본이득세) 개인 소지품 대여 관련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대한 새로운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음
- 기존에는 현행 「원천징수세법(Kupongskattelag)」에 따라, 은행 및 기업에서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30%의 원천징수세

율이 적용되었으며, 비거주자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었음

- (부가가치세) 경기 회복을 위한 조세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 코로나와19와 관련하여 EU에서 제작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2022년 7월 1일부터 VAT 등록 기준액을 기존 3만 크로나³⁶⁾에서 8만크로나³⁷⁾로 확대함
 - 2022년 7월 1일부터 자전거, 신발, 가죽제품, 의류 및 가정용 린넨 수리에 대한 VAT 세율을 기존 12%에서 6%로 6%p 인하함
 - 임시 고용 등 고용알선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소비세) 광고세(Reklamskatt)를 폐지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주류 및 담배와 관련된 소비세가 인상될 예정임
 - 스웨덴에서는 연간 10만크로나³⁸⁾를 초과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광고물을 게시한 경우, 기준액의 6.9%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었으나,³⁹⁾ 2022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함⁴⁰⁾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36)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9만원임

37)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91만원임

38) 2021년 10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65만원임

39) 스웨덴 국세청, "Beräkna reklamskatt," <https://www.skatteverket.se/foretag/skatteochavdrag/punktskatter/reklamskatt/beraknareklamskatt.4.35c34f651660af3747c15fa.html>, 검색일자: 2021. 10. 12.

40) 스웨덴 정부, "Reklamskatten slopas nästa år," 2021. 8. 31.,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1/08/reklamskatten-slopas-nasta-ar/>, 검색일자: 2021. 10. 12.

[덴마크 - 2022년 예산안 발표]

- 덴마크 정부는 2021년 8월 30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경기 부양책 및 증세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밝힘⁴¹⁾
 - 새롭게 도입되는 조세정책은 없으며, 과세 대상 기준액이 일부 조정될 예정임
 - 법인세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없으며, 법인세율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22%가 유지됨
 - 개인소득세의 경우, 가장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액을 기존 55만 1,300크로네⁴²⁾에서 55만 2,500크로네⁴³⁾로 인상함
 - 탈탄소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이 지속되어 운영될 예정임
 - 탄소저감 기술 등에 지출된 연구개발비에 대한 130% 비용공제가 2022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임
 - 2022년 1월 1일부터 석탄 및 코크스에 대한 세금이 1GJ당 63.0크로네⁴⁴⁾로 설정되며, 광물 및

야금 산업에 대한 세금은 2022년에 완전히 면제됨

- 2022년 1월 1일부터 전기세가 kWh당 0.903 크로네⁴⁵⁾ 인상되며, 전기난방의 경우 기업은 kWh당 0.004크로네,⁴⁶⁾ 가정은 kWh당 0.008크로네⁴⁷⁾ 인상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네덜란드 -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1년 9월 21일 2022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함⁴⁸⁾
 - 배당금 원천세와 도박세(kansspelbelasting)의 상계 가능성에 대한 한시적 제한 및 CFC의 외국 납부세액 상계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함
 - 도박세란, 확률 게임의 참가자가 게임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주최자에게는 상금 지급 시 도박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⁴⁹⁾

41) News IBFD, "No New Tax Proposals in Danish Budget," 2021. 8.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8-31_dk_1.html, 검색일자: 2021. 9. 24.

42)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42만원임

43)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64만원임

44)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천원임

45)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8원임

46)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0.74원임

47)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원임

48) News IBFD, "Tax Plan 2022 Netherlands Confirms Corporate Income Tax Rates Will Remain Unchanged in 2022," 2021. 9.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9-22_nl_3.html, 검색일자: 2021. 9. 24.

49) 네덜란드 국세청, "Kansspelbelasting," 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zakelijk/overige_belastingen/kansspelbelasting/, 검색일자: 2021. 10. 12.



●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법인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15% 또는 25%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최하위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기존 24만 5천유로⁵⁰⁾에서 39만 5천유로⁵¹⁾로 확대함

■ 포트폴리오 투자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 (Dividendbelasting)과 도박세가 법인소득세와 상계 가능한 조항은 네덜란드 거주기업뿐 아니라 비거주 기업에도 적용 가능하며, 상계 가능 금액에 제한을 두기로 함

- 네덜란드는 결손이 발생하여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불가능한 배당금 원천징수세액 및 도박세액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상계 가능 최대 금액은 과세기간에 납부할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며, 초과된 세금은 이월 가능함

■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CFC의 외국납부세액은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 가능함

● 다만, 다수의 국가에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공제 순서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시한 바가 없어 추가 논의가 필요함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받는 보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중국 - 성시유호건설세 세무행정 명확화 및 세제혜택 연장 발표]

■ 중국 국세청은 2021년 8월 30일, 성시유호건설세(Urban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Tax: UMCT)⁵²⁾의 세무행정을 명확히 하는 고시(Public Notice) [2021] No. 26를 발표함⁵³⁾

- 증치세·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성시유호건설세의 납세의무자이지만 외국기업 및 외국인은 성시유호건설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
- 성시유호건설세 과세표준은 증치세·소비세 등의 납부세액임
- 납세의무자의 소재지에 따라서 최소 1% ~ 최대 7%의 세율이 적용되며, 시내이거나 시내와 가까울수록 적용 세율이 높음

50)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3,841만원임

51)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4,560만원임

52) 성시유호건설세란, 도시를 유지 및 보호하고 건설하는 자금의 수입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도시의 유지 보호 및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 목적세를 말함(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중국편」, 2009, p. 259)

53) IBFD, "China Clarifies Administration of Urban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Tax," 2021. 9.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9-06_cn_1.html, 검색일자: 2021. 9. 16.

- 증치세·소비세 등을 납부할 때, 성시유호건설세도 함께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성시유호건설세의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은 증치세·소비세 등의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과 같음
- 증치세·소비세 등의 징수가 감면되거나 환급일 경우 성시유호건설세도 함께 감면·환급됨을 명확히 함
 - 단, 성시유호건설세는 부가세(Sur tax)이므로, 단독으로 감면하거나 환급할 수 없음

- 하인 경우 성시유호건설세 납부세액을 50% 감면함
 -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됨
- 공무원, 퇴역군인 등 회람 [2019] No. 21~22에 명시된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성시유호건설세 납세의무를 면제함
 -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치을 연구원>

■ 중국 국세청은 같은 날, 성시유호건설세의 세제혜택 연장이 포함된 회람(Circular) [2021] No. 27도 발표함⁵⁴⁾

- 중국 내 표준금거래소 및 상해선물거래소 (Shanghai Futures Exchange)에서 판매하는 금 (Gold) 및 국가핵심용수 사업에 성시유호건설세 납세의무 면제를 유지함
 - 별도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됨
- 중국 소규모 납세자(Small-Scale Taxpayers)의 월 매출액이 15만위안⁵⁵⁾ 초과 41만 6천위안⁵⁶⁾ 이

[인도 - 소득세 등 신고 및 납부 기한 추가 연장]

- 인도 정부는 2021년 소득세 신고서 및 양식 등의 제출기한을 연장함⁵⁷⁾
 - 코로나19를 비롯한 납세자와 이해관계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비롯한 직·간접세의 제출기한 및 납부기한을 연장함
 - 이러한 연장은 2021년 5월에 실행되었던 연장 조치⁵⁸⁾를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것임

54) IBFD, "China Extends Preferential Policy for Urban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Tax," 2021. 8.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8-30_cn_1.html, 검색일자: 2021. 9. 15.

55) 2021년 9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53만원임

56) 2021년 9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637만원임

57) IBFD, "India Further Extends Various Compliance Deadlin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9-10_in_1.html 검색일자: 2021. 9. 14.

58) IBFD, "COVID-19 Pandemic: India Extends Compliance Deadlines under Income Tax Act,"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5-21_in_1%23tns_2021-05-21_in_1, 검색일자: 2021. 9. 14.



- 2021/22의 소득세 관련 신고서에 대한 마감일은 아래와 같이 기존의 마감일로부터 재연장됨
 - 2021년 7월 31일 마감 →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1년 10월 31일 마감 → 2022년 2월 15일까지
 - 2021년 11월 30일 마감 → 2022년 2월 28일까지
- 2021년 9월 30일이 제출 마감일인 2020/21 감사 보고서는 2022년 1월 15일로 제출기한이 연장됨
- 2021년 10월 31일이 제출 마감일인 2020/21에 대한 국제거래 또는 특정 국내거래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회계사의 보고서는 2022년 1월 31일로 제출기한이 연장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인도네시아 - 국내 투자자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투자자의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⁵⁹⁾
- 고정사업장을 포함한 거주납세자의 채권 이자소득 수취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함

- 이러한 조치는 기존 조세정책상 1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에 비해 10%라는⁶⁰⁾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와의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임

- 국내 투자자에 대한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뉴질랜드 - 암호자산(cryptoassets)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정비]

- 뉴질랜드 정부는 2021년 9월 8일, 암호자산(cryptoassets)⁶¹⁾ 관련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규정 개정안을 포함하는 2021/22회기 세율안을 의회에 제출함^{62), 63)}
- 금번 변경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암호자산을 명시적(expressly)으로 제외시켰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5%)됨
 - (과세 대상 1)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s 또는 NFT) 거래

59) IBFD, "Indonesia Lowers Withholding Tax on Interest from Bonds for Domestic Investor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9-06_id_1.html 검색일자: 2021. 9. 14.

60) IBFD, "Indonesia Issues Implementing Regulation for Lower Withholding Tax Rate on Interest Paid to Non-Residents,"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1-03-24_id_1.html#tns_2021-03-24_id_1 검색일자: 2021. 9. 14.

61) 암호화폐(cryptocurrencies) 의미와 동일함

62) 뉴질랜드 의회, Taxation (Annual Rates for 2021-22, GST, and Remedial Matters) Bill, https://www.parliament.nz/mi/pb/bills-and-laws/bills-proposed-laws/document/BILL_115767/taxation-annual-rates-for-2021-22-gst-and-remedial-matters, 검색일자: 2021. 9. 15.

63) 뉴질랜드 국세청, Taxation (Annual Rates for 2021 22, GST, and Remedial Matters) Bill, <https://taxpolicy.ird.govt.nz/publications/2021/2021-commentary-argrm-bill>, 검색일자: 2021. 9. 15.

- (과세 대상 2) 암호자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
- 기존 부가가치세 규정은 암호자산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자산에 대한 규정 적용에 다소 모호한 면이 있었으며,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점들이 존재하였음
 - 암호자산의 일반 공급에는 15%의 일반세율, 금융거래에는 면세, 비거주자에 대한 공급에는 영세(0%)가 적용되기 때문에 판매자가 암호자산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왜곡(distortion) 및 선호(preference)를 발생시켰음
 - 암호자산이 취득될 때와 법정화폐로 교환될 때, 부가가치세를 각각 부과하면서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발생시켰음
- 가상자산의 기능과 거래의 속성별로 부가가치세의 취급이 달라지면서, 납세자의 이행비용(compliance costs)을 증가시켰음
- 한편, 암호자산을 발행하여 차입(debt) 혹은 자본(equity) 성격의 자금을 조달하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조달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공제 가능 항목은 법률·자문 서비스(legal or advisory services) 등임
- 법안 통과 시 암호자산의 부가가치세 제외 규정은 2009년 1월, 암호자산을 통한 조달 부대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규정은 2017년 4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김정명 회계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유럽중앙은행, Economic Bulletin* 발표(2021. 9. 23.)¹⁾

* 유럽중앙은행에서는 경제, 금융 및 통화에 관한 동향·전망을 실은 보고서를 월 단위로 발표함(2021년에는 2월, 3월, 5월, 6월, 8월에 Economic Bulletin을 발표)

- (경제 동향) 유로지역의 2021년 2분기 GDP는 2.2%로 전망되며, 백신접종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반등할 전망이나, 여전히 2019년 4분기(2.5%)보다는 낮은 수준
- (경제 전망)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5.0%, 2022년 4.6%, 2023년 2.1%로 전망함
 - 2021년 3분기 이후 백신접종의 진전으로 경제 회복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 동제한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이뤄지고, 공급 측면의 병목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중기적으로 국내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과 더불어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제회복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²⁾) 유로지역 물가 상승률은 8월 3%³⁾

로 증가하였고, 이번 가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내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2021년 2.2%, 2022년 1.7%, 2023년 1.5%)

- 물가 상승은 지난 해 중반 이후 유가의 강한 상승, 독일의 부가가치세 정상화, 2020년 판매 지연, 장비 및 원자재의 일시적인 부족에서 비롯된 원가 상승 압력 등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일시적일 것으로 평가

- (재정수지 동향 및 전망⁴⁾) 유로지역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21년 소폭 개선된 후 2022년에 강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2020년 유로지역의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7.3%를 기록
 - (2021년) 유로지역 재정적자는 7.1%로 전망하고, 팬데믹의 감소와 경기회복의 본격화로 경제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 (2022~2023년) 2022년부터 재정수지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2022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3.0%, 2023년 2.1%로 전망
- (재정 기초) 유로지역의 재정기초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 확장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 대체로 중립 기초를 보일 것으로 전망⁵⁾

1) 유럽중앙은행, *Economic Bulletin*, Issue 6, 2021., <https://www.ecb.europa.eu/pub/economic-bulletin/html/eb202106.en.html>

2)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로 측정된 물가 상승률

3) 유럽 통계청의 속보치(flash estimate)에 따른 수치이며, 연율로 변환함

4) 재정에 관한 내용은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에서 발표한 거시경제전망 보고서(*ECB Staff Macroeconomic Projections for the Euro Area*, 2021. 9., https://www.ecb.europa.eu/pub/projections/html/ecb.projections202109_ecbstaff-1f59a501e2.en.html#toc5)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을 동 발표 내용에서 서술하고 있음

5) 거시경제전망 보고서(유럽중앙은행, *ECB Staff Macroeconomic Projections for the Euro Area*, 2021. 9.)에 따르면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NGEU 보조금을 수입 측면에 반영)로 측정된 재정기초는 2019~2021년 재정확장 기초, 2022~2023년 재정긴축 기초로 전망(2019년 GDP 대비 -0.4%, 2020년 -4.3%, 2021년 -1.1%, 2022년 2.3%, 2023년 0.2%)

- 팬데믹의 종결과 임시 지원 조치의 감소로 2022년부터 대규모의 재정지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정부채무) 팬데믹 대응으로 2020년 유로지역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99%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정점을 찍고, 2023년에는 약 94%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정책 권고) 취약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유로지역의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 재정 조치는 일시적이고, 경기 대응적이며, 타깃된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함
 - 국가별 재정 조치를 보완하는 EU 차원의 지원인 차세대 EU(NGEU) 패키지가 전반적인 EU의 경제회복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EU 통계청, 2021년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21. 9. 7.)⁶⁾

- (전체) 2021년 2분기의 전분기 대비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2%, EU 27개국의 경우 2.1%로 1분기 성장률에 비해 각각 2.5%p, 2.2%p 상승함
- (지출항목별) 직전 분기와 비교한 2021년 2분기 유로지역의 가계 최종소비지출 변화율은 3.7% (1분기 -2.1%),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1.2%(1분기 -0.5%), 총고정자본형성은 1.1%(1분기 -0.2%),

<표 1> 2021년 2분기 GDP 지출항목별 변화율

(단위: %)

구분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유로지역	EU	유로지역	EU
가계 최종소비지출	3.7	3.5	12.6	12.2
정부 최종소비지출	1.2	1.2	7.1	6.7
총고정자본형성 ¹⁾	1.1	1.0	18.2	16.5
수출	2.2	1.8	24.8	24.9
수입	2.3	2.2	20.4	21.2
GDP	2.2	2.1	14.3	13.8

주: 1)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출처: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second quarter of 2021," 2021. 9. 7.

수출은 2.2%(1분기 0.7%), 수입은 2.3%(1분기 0.4%)를 기록(<표 1> 참조)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선임연구원>



IMF

■ IMF,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한 제안 업데이트 발표(2021. 8. 23.)⁷⁾

- IMF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코로나19 종식 계획⁸⁾의 진행 상황을 8월 중순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자료를 발표
- 핵심 목표는 백신접종 목표 달성, 하방 위험 대응, 백신보급 확대 등 세 가지로 구성

6)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second quarter of 2021," 2021. 9. 7.,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1563259/2-07092021-AP-EN.pdf/5adabdef-cc74-9c1c-fc2b-223171814f39?t=1631003082241>

7) IMF, "A Proposal to End the COVID-19 Pandemic: Update as of Mid-August," 2021. 8. 23., <https://www.imf.org/-/media/Files/News/Speech/2021/pandemic-proposal-update-aug23.ashx>

8) IMF의 코로나19 종식 계획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호, 2021을, 국제기구들의 공동 성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6월호, 2021을 참고 바람



- 핵심 조치는 일곱 가지로 구성되며, 그중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및 아프리카백신훈득신탁(AVAT)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해 모든 국가에서 인구의 60% 이상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상당한 진전을 이룸
- 반면, 진단시약·치료제·개인보호장비 보장, 백신 접종 준비를 위한 신규 자금 지원 조치는 진전이 거의 없음

■ IMF, 국제기구들과 코로나19 대응 공동성명 발표 (2021. 8. 27.)⁹⁾

- IMF, 세계은행그룹, WHO, WTO는 AVAT 등 대표들과 만나 저소득국가 및 하위소득국가, 특히 아프리카 내 국가들의 백신보급 장애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
- 국제기구들은 생존율 및 경제 수준의 격차를 야기하는 백신 불평등 위기가 심각하다고 평가
- 국제기구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 백신 제조사, 국제 사회의 협조를 요청
- 이에 발맞춰 국제기구들은 보조금과 양허성 자금 제공을 위해 COVAX 및 AVAT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모색하겠다고 발표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선임연구원>



■ OECD 중간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발표(2021. 9. 21.)^{10), 11)}

- (현황) 최근 세계 경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백신접종률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단기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음
 - 세계 경제는 각 국가들의 강력한 정책 지원, 효과적인 백신 배포 및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국가별 GDP, 고용 등 경기회복 양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남
 - (미국) 미국의 GDP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고용시장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음
 - (유럽) 고용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나 GDP는 더디게 회복되고 있음
 - (일부 신흥국) 경제활동은 빠르게 회복되는 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음
 - 세계 GDP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국가별로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 델타 변이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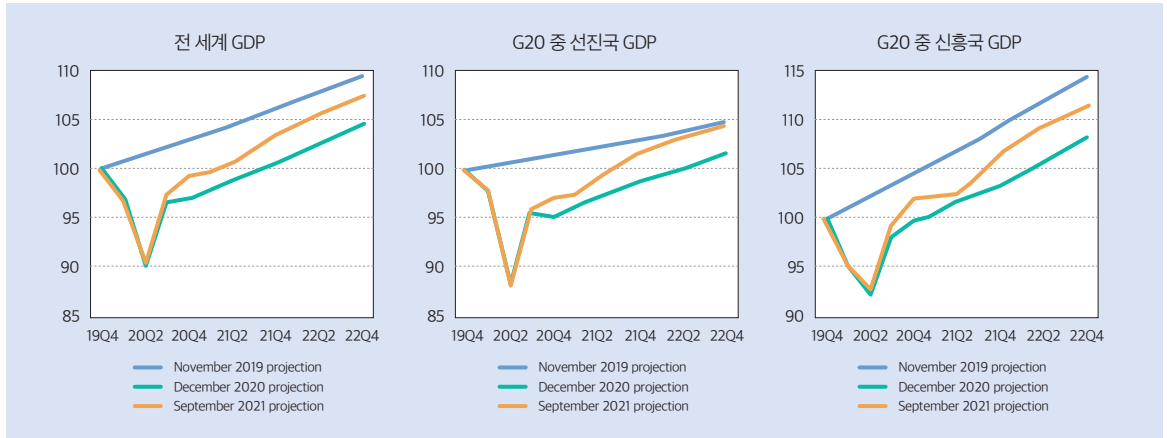
9) IMF, "Joint Statement of the Multilateral Leaders Taskforce on Scaling COVID-19 Tools: A Crisis of Vaccine Inequity," 2021. 8. 27.,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8/27/pr21245-joint-statement-multilateral-leaders-taskforce-scaling-covid-tools-crisis-vaccine-inequity>, 검색일자: 2021. 9. 27.

10)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1*, 2021. 9. 21.,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outlook/volume-2021/issue-1_490d4832-en?_ga=2.43985445.166872776.1632359254-1101585482.1629679054, 검색일자: 2021. 9. 24.

11)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는 연 2회 *OECD Economic Outlook*(통상 5월, 11월 발표)의 중간시점(3월 및 9월)에 발표하는 G20 국가 중심의 경제전망보고서임

[그림 1] 세계 경제성장 전망 경로

(Index 2019Q4=100)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Keeping the Recovery on Track," p. 15, Figure 10, 2021. 9. 21.

이러스의 경제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나 심리 위축으로 인해 단기 성장 모멘텀에 영향을 줌

-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등 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봉쇄 조치가 재도입되어 이동성 감소, 공급 차질, 운송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일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높은 상품가격 및 글로벌 운송비용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캐나다, 영국 및 일부 신흥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하였고 유럽 및 아시아, 일부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 확대의 주요 요인은 원자재 가격 및 글로벌 운송비용 상승이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없어도 내

년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경제전망) OECD는 2021년 및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5.7%, 4.5%(2021년 5월 전망 대비 -0.1p, 0.5%p 조정)로 전망하고 2022년에는 단기 성장 모멘텀 약화 요인이 점차 해소되면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국가별 경제전망) 각 국가별 백신보급, 정책 여력 등에 따라 불균등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추가 재정지원(인프라 투자 확대) 가능성, EU 회복기금(Next Generation Funds) 등 선진국의 확장적 정책과 가계저축 감소 등이 선진국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코로나19 위기 전 성장경로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백신접종률이 낮고 정책여력이 제한적인 일부 신흥국의 경우 회복속도에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



<표 2> 실질GDP 성장을 전망(2021년 9월 OECD 중간경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구분	2020년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중간경제 전망	2021년 5월 전망치 대비 차이	중간경제 전망	2021년 5월 전망치 대비 차이
세계	-3.4	5.7	-0.1	4.5	0.1
G20 ¹⁾	-3.2	6.1	-0.2	4.8	0.1
호주	-2.5	4.0	-1.1	3.3	-0.1
캐나다	-5.3	5.4	-0.7	4.1	0.3
유로지역	-6.5	5.3	0.1	4.6	0.2
독일	-4.9	2.9	-0.4	4.6	0.2
프랑스	-8.0	6.3	0.5	4.0	0.0
이탈리아	-8.9	5.9	1.4	4.1	-0.3
스페인 ²⁾	-10.8	6.8	0.9	6.6	0.3
일본	-4.6	2.5	-0.1	2.1	0.1
한국	-0.9	4.0	0.2	2.9	0.1
멕시코	-8.3	6.3	1.3	3.4	0.2
터키	1.8	8.4	2.7	3.1	-0.3
영국	-9.8	6.7	-0.5	5.2	-0.3
미국	-3.4	6.0	-0.9	3.9	0.3
아르헨티나	-9.9	7.6	1.5	1.9	0.1
브라질	-4.4	5.2	1.5	2.3	-0.2
중국	2.3	8.5	0.0	5.8	0.0
인도 ³⁾	-7.3	9.7	-0.2	7.9	-0.3
인도네시아	-2.1	3.7	-1.0	4.9	-0.2
러시아	-2.5	2.7	-0.8	3.4	0.6
사우디아라비아	-4.1	2.3	-0.5	4.8	1.0
남아프리카	-7.0	4.6	0.8	2.5	0.0

주: 1) 유럽연합은 G20의 회원국이나 G20 집계 시 자체적으로 회원인 국가만 포함

2) 스페인은 G20의 영구 초청국임

3) 인도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Keeping the Recovery on Track," 2021. 9. 21., p.4, Table 1

- (물가 전망) G20 국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1년 3.7%, 2022년 3.9%(2021년 5월 전망 대비 0.2%p, 0.5%p 상향 조정)로 전망
- 소비자 물가는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공급 능력 향상으로 압력이 감소하여 2021년 4사분기(4.5%)부터 점차 안정화되어 2022년 4사분기 3.5%까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어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위험요인) 향후 경제성장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공존하고 팬데믹 전개 양상, 백신접종 속도 및 보급 상황, 경제활동의 전면적 재개 가능성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 (상방 리스크) 백신접종 가속화에 따른 경제 심리 개선, 가계 및 기업의 소비지출 확대, 가계저축률의 하락
- (하방 리스크) 전 세계적인 백신보급 지연, 기존 백신으로 통제 불가능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에 따른 엄격한 봉쇄 조치 시행으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 및 소비 위축 우려
- (정책권고) 완전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 전 세계적 백신보급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적극적인 거시정책 지속, 구조개혁을 권고함¹²⁾
 - 코로나19 위기 완전한 극복과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서 코로나19 백신이 전 세계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이 필요
 - 백신보급이 더딘 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 공급 지원, 방역 관련 지식 및 의료자원 공유 등이 필요
 -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명확한 정책방향(forward guidance)을 제시하도록 해야 함
 - 중기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할 때까지 자산매입 프로그램 등 기존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유지가 바람직하나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나 물가의 오버슈팅(overshooting) 허용범위에 대해 경제 주체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방향의 성급한 전환을 지양하고 각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지원을 유연하게 적용
 -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은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고 노동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된 후에 고려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중장기적으로 보건, 디지털, 저탄소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등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성장 달성에 정책목표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는 경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부문 간 불평등 확대, 산업구조 재편 등 구조적 변화도 유발함
 - 코로나19 이후 부문 간 노동 및 자본의 효율적 재분배, 경제의 복원력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선제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요구됨
 -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저소득 가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향후 코로나 위기 극복으로 긴급한 소득지원 필요성이 줄어들면 디지털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선임연구원>

12)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OECD 중장기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2021. 9. 21. 발표)」, p. 10,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6/view.do?seq=29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자: 2021. 9. 28.



미국

[예산·결산 등]

■ OMB, 대통령 예산안 수정전망(Mid-Session Review: MSR) 발표(2021. 8. 27.)¹³⁾

- (수입) FY2022 수입은 5월 추정치(4조 1,740억달러) 대비 5.7%(2,380억달러) 증가한 4조 4,120억달러(GDP 대비 18.0%) 계획

- (지출) FY2022 총재정지출은 5월 추정치(6조 110억달러) 대비 약 1.0%(610억달러) 증가한 6조 720억달러(GDP 대비 24.8%) 계획
- (수입 기준선 전망 변화) FY2022 수입은 5월 전망(3조 9,880억 달러) 대비 5.6% 증가한 4조 2,260억달러 전망
- (지출 기준선 전망 변화) FY2022 총재정지출은 5월 전망(5조 7,070억달러) 대비 약 1.1% 증가한 5조 7,680억달러 전망

<표 3> 예산안 전망 (대통령 예산안(5월) VS MSR(8월) 수정 전망)

재정 전망		실적			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2031
예산 총량(십억달러)												
수입	5월	3,330	3,462	3,421	3,581	4,174	4,641	4,828	5,038	5,332	...	6,643
	MSR				4,037	4,412	4,841	5,049	5,286	5,598	...	7,042
지출	5월	4,109	4,447	6,550	7,249	6,011	6,013	6,187	6,508	6,746	...	8,211
	MSR				7,151	6,072	6,157	6,380	6,740	7,004	...	8,478
재정 적자	5월	779	984	3,129	3,669	1,837	1,372	1,359	1,470	1,414	...	1,568
	MSR				3,114	1,660	1,316	1,331	1,454	1,406	...	1,435
국가 채무 ¹⁾	5월	15,750	16,803	21,017	24,167	26,265	27,683	29,062	30,539	31,958	...	39,059
	MSR				23,612	25,533	26,896	28,246	29,707	31,118	...	37,892
예산 총량(GDP대비 %)												
수입	5월	16.5	16.3	16.3	16.3	17.8	18.9	18.9	19.0	19.4	...	19.9
	MSR				18.0	18.0	18.9	18.9	19.0	19.4	...	19.9
지출	5월	20.3	21.0	31.2	32.9	25.6	24.5	24.2	24.5	24.5	...	24.6
	MSR				31.8	24.8	24.0	23.9	24.3	24.3	...	24.0
재정 적자	5월	3.9	4.6	14.9	16.7	7.8	5.6	5.3	5.5	5.1	...	4.7
	MSR				13.8	6.8	5.1	5.0	5.2	4.9	...	4.1
국가 채무 ¹⁾	5월	77.8	79.2	100.1	109.7	111.8	112.7	113.8	115.2	116.1	...	117.0
	MSR				105.0	104.3	104.8	105.6	107.0	107.9	...	107.2

주: 1) 국가채무는 정부내부거래를 제외한 연방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규모를 의미

출처: OMB, Fiscal Year 202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9), 2021. 5. 28.

OMB, Fiscal Year 202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MSR (Table S-1), 2021. 8. 27.

13) OMB,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8/msr_fy22.pdf, 검색일자: 2021. 9. 14.

<표 4> MSR 경제 전망

(단위: 십억달러, %)

구분(CY ¹⁾)	2019	2020	2021	2022	...	2031
	실적		전망			
GDP 명목 규모 ¹⁾	21,433	20,937	23,097	24,799	...	35,724
실질GDP 성장률	2.3	-2.4	7.1	3.3	...	2.3
CPI(Urban) ²⁾	2.0	1.2	4.8	2.5	...	2.3
실업률 ¹⁾	3.7	8.1	5.5	4.2	...	3.8

주: 1. 실질성장률, CPI, 항목은 전년도 4분기 대비(Fourth quarter over Fourth quarter) 수치

1) (CY = Calendar Year): GDP 명목규모와 실업률은 calendar year 기준임

2) 계절 조정된 도시소비자 물가 지수

출처: OMB, Fiscal Year 202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MSR (Table 2), 2021. 8. 27.

- (경제전망) 전년도(2020년) 4분기 경제는 전전년도(2019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2.4%)을 기록하였으며, 올해(2021년) 4분기 성장률은 전년도(2020년) 동기 대비 7.1% 증가 전망

[기타]

■ 의회예산처(CBO), 2018 가구소득 분배(“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18”) 보고서 발표(2021. 8. 4.)¹⁴⁾

- (개요) 본 보고서는 가구 소득, 자산조사 이전지출¹⁵⁾(means-tested transfers)(이하 이전지출), 연방 세금을 종합하여 1979~2018년까지의 가구

소득 분배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2018년 기준, 총 1,290만가구/ 총소득규모: 총 14.8조달러)

- (소득) 1979~2018년 동안 이전지출 및 연방세 전/후의 평균 소득은 모든 계층(총 5개 분위)에서 증가하였으며, 최상위 분위(5분위)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임
- (자산조사 이전지출) 1979~2018년 동안 모든 이전지출의 50% 이상이 최하위 분위(1분위)를 대상으로 지급됨(지난 40년간 이전지출 및 연방세 전 소득 대비 이전지출 비중의 증가는 메디케이드 지출이 주요 요인)
- (연방 세금) 1979~2018년 동안 모든 소득분배 구간 전반에 걸쳐 평균 연방세율 감소. 이 중 최하위 분위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음
- (2017 세제개혁) 2017년 말에 입법된 세제개혁(P.L. 115-97)으로 인해 2018년도의 평균 연방세율이 모든 분위에서 하락함
- (소득 불평등) 1979~2018년 동안 이전지출 및 연방세 전/후의 지니계수 모두 증가하였으나, 이전지출과 세금은 소득불평등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이전지출 및 연방세 전 소득) 1979~2018년 동안 최상위 분위의 실질 수입은 최하위 분위보다 더 빠르게 증가
 - 최상위 분위의 실질 평균 수입은 111%(연율 1.9%) 증가, 중위 3개 분위(2, 3, 4 분위) 37%(연율

14) CBO, <https://www.cbo.gov/system/files/2021-08/57061-Distribution-Household-Income.pdf>, 검색일자: 2021. 9. 17.

15) 자산조사 이전지출: 소액 자산 및 저소득 개인 및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방/주/지방정부의 현금(또는 현금에 준하는) 지원 지출을 의미함(참고: <https://www.nber.org/system/files/chapters/c10253/c10253.pdf>)



0.8%) 증가, 최하위 분위 40%(연율 0.9%) 증가

- (이전지출 및 연방세금 후 소득) 1979~2018년 동안 이전지출 및 연방세금 전 수입보다 균등 (more evenly)하게 증가
 - 최상위 분위(5분위)의 평균 수입은 120%(연율 2.0%) 증가(최상위 1%의 경우, 1979년 대비 268% 증가)
 - 최하위 분위(1분위) 91%(연율 1.7%) 증가 (2018년 3만 7,700달러)
- (소득 불평등) 1979년도 이전지출 및 세금 전/후 지니계수는 (전) 0.412 → (후) 0.352이며, 2018년 도는 (전) 0.521 → (후) 0.437로 집계되고 있음

■ 의회예산처(CBO), 인플레이션에 따른 효과 분석 발표 (2021. 9. 1.)¹⁶⁾

- CBO는 하원의원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의 질의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효과(Inflation and Its Effects)를 발표함
 -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때 소득, 조세, 경제성장 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CBO의 전망 치를 기준으로 작성됨
- CBO는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증가가 가계 구매 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봄
 - 인플레이션이 노동소득 증가보다 빠르게 증가 할 때 가계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가계의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고 답함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1%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은 0.1%p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함

- 높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생산과 소득을 감소시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

■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1. 9. 8.)¹⁷⁾

※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 (전반적인 경제활동) 7월 초에서 8월 사이 완만 하게 경제가 하락함
 - 제조업, 교통업, 비금융서비스업, 주거용 부동 산 등의 부문은 강세를 보였으나, 델타 변종 바 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외식, 여행 및 관광이 크게 후퇴함
 - 외식, 여행 및 관광과 같은 수요 감소와 달리 마이크로칩 공급 부족에 따른 자동차 판매의 약세, 주택 판매 제한 등 공급 차질과 노동력 부족의 영향을 받은 부문도 있음
 - 농업과 에너지 부문은 지역별 차이가 있었지 만 대체로 긍정적이었음
 - 공급 차질과 자원 부족에 대한 우려는 확산되 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의 기업들은 단기 전망 을 낙관하고 있음
- (고용 및 임금)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 로 고용이 증가함
 - 노동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노동공급 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지역에서 고용 제한과 기업활동 제한이 있었다고 언급함

16) CBO, *Inflation and Its Effects*, 2021. 9. 1., 검색일자: 2021. 9. 16., <https://www.cbo.gov/publication/57409>

17) *Fed, Beige Book September 8, 2021*, 2021. 9. 8., 검색일자: 2021. 9. 16.,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109.htm>

- 이러한 노동공급 부족의 원인은 이직 증가, 조기 퇴직, 육아, 실업 수당 강화 등에 기인함
 -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중서부 및 서부 지역에서 특히 높은 임금 상승률이 보고됨
 - 일부 지역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활발했고, 근로자 유치를 위해 임금 인상, 상여금, 유연 근로제도 사용이 증가함
 - (물가)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증가했고, 투입비용 압력도 지속됨
 -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 인플레이션 속도가 빠르다고 보고했고, 나머지 절반은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함
 - 대부분 지역에서 목재를 제외한 금속 및 금속 기반 제품, 화물 및 운송 서비스, 건설 자재 등의 원가가 크게 상승했고,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음
 - 여러 지역의 기업들이 향후 몇 달 동안 판매가격이 높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선임연구원, 서동규 연구원>

- FY2020 일반회계의 국가 수납 금액은 184조 5,788억엔, 국가 지출금액은 147조 5,973억엔으로, 36조 9,814억엔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재정법 제6조에 의한 FY2020 잉여금은 4조 5,363억엔임
 - FY2020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비율은 105%로 전년 동기 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이는 조세 및 인지수입의 증가에 기인함
- FY2020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23.4%,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94.8%를 기록함(<표 5> 참조)

- 재무성, FY2022 예산 개산 요구 및 요망액 발표(2021. 9. 7.)¹⁹⁾
 - FY2022 일반회계 전체 요구액은 107조 2,873억엔, 요망액을 더한 합계액은 111조 6,559억엔으로 FY2021 당초 예산 대비 9.9% 증가²⁰⁾
 - (국채비) 전년 대비 27.3% 증가한 30조 2,362억엔으로, 요구 단계에서 사상 최고를 기록
 - (재정투융자) 재정투융자 요구액은 19조 9,113억엔으로 전년 대비 20조 9,943억엔 감소

 **일본**

[예산-결산 등]

- 재무성, FY2020 예산 사용 상황 개요 발표(2021. 9. 3.)¹⁸⁾

[기타]

- 일본은행,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 옵션 개시(2021. 9. 22.)²¹⁾

18) 재무성,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0/02_4sgai.html, 검색일자: 2021. 9. 6.
 19) 재무성,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y030907.pdf, 검색일자: 2021. 9. 7.
 20) FY2020 예산에는 코로나 대책 예비비 5조엔이 포함됨
 21) 일본은행, https://www.boj.or.jp/announcements/release_2021/rel210922a.pdf, 검색일자: 2021. 9. 23.



<표 5> FY2020 예산사용 상황(출납 정리기간 포함) 개요

(단위: 억엔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A)	1,756,877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D)	1,822,658	세입예산액(A)	4,252,632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D)	4,265,286
4분기 국가 수납 금액(B)	835,730	4분기 국가 지출 금액(E)	409,118	4분기 국가 수납 금액(B)	997,112	4분기 국가 지출 금액(E)	835,400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47.5 (52.3)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22.4 (26.7)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23.4 (22.9)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19.5 (19.1)
4분기 누계(C)	1,845,788	4분기 누계(F)	1,475,973	4분기 누계(C)	4,175,611	4분기 누계(F)	4,045,188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105.0 (104.3)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80.9 (92.3)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98.1 (98.6)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94.8 (95.1)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비율
2. 단위 미만 절사

출처: 재무성, 「令和2年度予算使用の状況(令和2年度出納整理期間を含む。)の概要」 2021. 9. 3.,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0/02_4sgai.html

- (취지)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마중물 제도로 기후변화 대응 투융자 잔액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자금공급제도
- (대상)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TCFD²²⁾가 제안하는 4항목(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와 목표) 및 투융자 목표·실적을 제시하는 금융기관
- (지원내용) 원칙적으로 1년간 0% 이율 대출로, 차환 가능하여 장기 자금 조달 가능
 - 해당 금융기관에 보완 당좌예금제도²³⁾상 “매 크로 가산 2배 조치” 적용 및 대출촉진부리제도²⁴⁾상의 카테고리Ⅲ(0% 지준부리)를 적용
- (실시기간) 연내 개시를 목표로 접수 중이며, 금융 조절상 문제가 없는 한 2031년 3월 31일까지 지원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정은 선임연구원>

22)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설립한 금융안정위원회의 태스크포스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23)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로 3계층으로 분할하여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금리로 적용하여 운용 중임

24) 민간금융기관의 대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은행에 예치해두는 당좌예금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 단기 정책금리가 마이너스로 인하될 경우 가산금리로 조정하여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영향을 완화시킴



독일

[기타]

■ 재무부,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기간 12월 말까지 연장 발표(2021. 9. 8)^{25), 26)}

- 독일 경제는 대체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반면, 일부 산업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제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독일 정부는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Überbrückungshilfe III Plus)의 기간을 2021년 9월 3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 연방정부, 초등학교 종일 돌봄(Ganztagsbetreuung) 시행 계획 발표(2021. 9. 7)²⁷⁾

- (배경) 초등학교의 종일 돌봄 확대는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이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독일은 더 나은 보육시스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옴
- (현황) 독일 상하원은 초등학생 대상의 온종일 돌봄 시행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이로써 초등학생은 2026년 8월 1일부터 종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효됨

- (지원계획) 연방정부는 초등 종일 돌봄 시행에 필요한 투자를 위해 총 35억유로를 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운영비용 분담금도 확대해 2030년부터는 매년 최대 13억유로까지 지원할 계획

■ 경제에너지부, EU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 중 클라우드 프로젝트 시행 발표(2021. 9. 15)²⁸⁾

- (배경) EU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는 유럽연합 내 산업과 경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문에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임²⁹⁾
- (클라우드 프로젝트) 독일 정부는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주권, 지속가능성, 평등과 같은 가치를 확보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며, 자동화 및 상호 연결된 클라우드-인프라-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임
- (향후 계획)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독일 회복 및 복구 계획(Deutscher Aufbau-und Resilienzplan: DARP)'으로부터 7억 5천만유로를 지원할 계획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선임연구원>

25) 독일 재무부, 2021. 9. 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1/09/2021-09-08-details-verlaengerung-ueberbrueckungshilfen-geeint.html>, 검색일자: 2021. 9. 10.
 26) 2021년 6월 7일에 연방정부는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한차례 연장한 바 있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6월호, 2021 참고)
 27) 독일 연방정부, 2021. 9. 7.,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ganztagsausbau-grundschulen-1766962>, 검색일자: 2021. 9. 10.
 28) 독일 경제에너지부, 2021. 9. 15.,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1/09/20210915-altmaier-zukunft-made-in-germany-startschuss-fur-europaisches-projekt-cloud-technologien.html>, 검색일자: 2021. 9. 23.
 29) European Commission, *Criteria for the analysis of the compatibility with the internal market of State aid to promote the execution of 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2014/C 188/02)*, 2014. 6. 20.



프랑스

[예산·결산 등]

■ 프랑스 재무부, FY2022 예산법안(PLF: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2*) 발표(2021. 9. 22.)³⁰⁾

- (예산안 기초) 2022년 예산법안은 프랑스의 경제 회복 및 재정의 점진적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경제전망) 2021년 경제성장률은 4월에 발표한 안정화 프로그램의 전망치보다 1%p 상승한 6%로 전망되며, 2021년 말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됨
 - 2022년 경제성장률은 4%로 전망
- (재정전망)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0년 9.1%로 크게 확대된 후 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2021년 8.4%로 다소 회복하고, 2022년에는 4.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
 - (재정지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GDP 대비 재정지출은 2020년 60.8%를 기록하였고, 이후 2021년 59.9%로 다소 감소하고 2022년에는 55.6%까지 감소할 전망
 - (재정수입) 경제활동의 개선으로 2021년 재정수입은 2021년 본예산 전망보다 207억유로 증가한 2,786억유로를 기록하고, 2022년 재정수입은 2021년 대비 134억유로 증가한 2,920억

유로로 전망

- (공공채무) GDP 대비 공공채무는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으로 2021년 115.6%까지 증가하지만 이후 경제 상황 및 재정수지의 개선으로 인해 2022년 114.0%로 다소 낮아질 전망
- (예산안 주요 내용) 2022년 예산법안은 생산성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 학교 교육(*enseignement scolaire*) 미션 지출 할당 금액이 전년 대비 17억유로 증가
 - 연구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미션 지출은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2022년 지출은 전년 대비 8억유로 증가
 -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지원 금액은 2017-2022년 사이에 40억유로 증가하였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함

■ 프랑스 재무부, FY2022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안(PLFSS: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2*) 발표(2021. 9. 24.)³¹⁾

- 경제활동 개선으로 인한 수입 증대로 2022년 사회보장 부문 재정적자는 2021년과 비교해 130억유로 개선된 216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선임연구원>

30) 재무부,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2, 2021. 9. 22.,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2-plf>, 검색일자: 2021. 9. 28.; 예산국,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PLF) pour 2022 en Conseil des ministres, 2021. 9. 22., <https://www.budget.gouv.fr/reperes/budget/articles/presentation-du-projet-de-loi-de-finances-plf-pour-2022-en-conseil-des>, 검색일자: 2021. 9. 28.

31) 재무부, Le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2022, 2021. 9. 24., <https://www.economie.gouv.fr/presentation-projet-loi-financement-securite-sociale-2022> 검색일자: 2021. 9. 28.



영국

[예산·결산 등]

■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 검토 발표 일정 확정 (2021. 9. 7.)³²⁾

- (개요) 영국 정부는 가을 예산안과 함께 향후 3년 동안의 정부 지출 계획을 설정하는 지출 검토 (Spending Review)를 10월 27일에 발표할 예정
 - 지출검토에서 향후 3년(FY2022-23 ~ FY2024-25)에 대한 부처의 경상 및 자본 예산과 권한 이양지역(Devolved Administration)의 포괄 보조금을 설정
 - 리시 수낙 재무부 장관은 공공재정을 지속가능한 경로로 유지하면서 공공 서비스 투자를 지속하고 성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지출 검토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
- (주요 이슈) 정부는 지출 검토에서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영국 국민의 우선순위 이행, 기업 및 일자리 지원 지속 등의 추진방안을 제시할 예정
 - 강하고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보장: NHS, 교육, 형사 사법 시스템, 주택에 투자하여 영국 전역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
 - 기회 확대를 위한 영국 전역의 레벨 업(Llevelling up), 낙후 지역의 성과(outcome) 개선 및 지역

리더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잠재력 발휘, 취약한 민간부문 강화

- 영국 및 세계에서 탄소 중립(Net Zero)으로의 전환을 선도
-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비전을 추진하고 EU 탈퇴로부터 기회를 포착
- 성장 계획(Plan for Growth)³³⁾ 이행: 인프라 및 혁신 혁명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과학의 초강대국으로 영국의 입지를 강화
- (지출 규모) 재무부 장관은 지출 검토 착수의 일환으로 향후 3년간 지출 한도를 설정함
 - 이번 의회 회기 동안 ‘핵심 부처별 지출(경상지출 및 투자)³⁴⁾의 연평균 실질 증가율은 약 4%이며 FY2024-25에 동 지출규모는 의회 회기 시작시점 대비 약 1,400억파운드(명목) 증가할 전망(<표 6> 참조)
 - FY2024-25에 경상지출은 약 4,400억파운드 증가
 - 핵심 부처별 경상지출은 2021 예산안에서 설정한 경로를 따르며 여기에 신규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Health and Social Care Levy)과 배당세율 인상(9월 7일 발표)으로 인한 순수입이 추가
 - 정부는 향후 3년간 의료 및 사회적 돌봄에 연평균 120억파운드를 추가 확보할 예정

32) HM Treasury, Chancellor launches vision for future public spending, 2021. 9. 7.,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launches-vision-for-future-public-spending>, 검색일자: 2021. 9. 8.

33) 영국은 2021년 3월에 인프라, 역량, 혁신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새로운 성장 계획을 발표하였음

34)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제외한 ‘부처별 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DEL)’



<표 6> 2021 지출검토의 RDEL과 CDEL 한도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FY2019-20~FY2024-25 기간 변화		
							연평균 실질 증가율	연평균 명목 증가율	명목 금액 증가
RDEL 한도(감가상각 제외)	-	-	-	408.4	422.0	440.5	3.1	5.0	97.5
2021 예산안 지출 가정: Core RDEL(감가상각 제외)	343.0	362.7	385.0	393.4	409.6	426.7	2.5	4.4	83.7
신규 RDEL 지출: 의료·사회적 돌봄(영국 전역)	-	-	-	15.0	12.4	13.8	-	-	-
Core CDEL 한도	70.4	91.6	99.8	107.3	109.1	112.8	7.3	9.3	42.5
총 Core DEL 한도	413.4	454.3	484.8	515.6	531.2	553.3	3.9	5.8	139.9

주: Core DEL은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제외한 '부처별 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DEL)'이며 RDEL은 자원(경상) DEL, CDEL은 자본 DEL을 의미
출처: HM Treasury, Chancellor launches vision for future public spending, 2021. 9. 7.의 표 수정

- 이러한 의료 및 사회적 돌봄 관련 추가 자금에 힘입어 2021년 지출검토의 NHS England 및 NHS Improvement³⁵⁾에 대한 부처별 경상지출 한도를 FY2024-25까지 약 1,600억 파운드로 확대
- 2021 예산안에서 설정한 대로 자본 투자의 큰 변화를 이행할 것이며 5년간 총 6천억파운드 이상 투자할 예정
 - 1970년대 후반 이후 GDP 대비 공공부문 순 투자 비율이 최고 수준
- (지출 효율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지출 계획이 조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최고의 가치로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부처에 최소 5%의 경상 예산 절감과 효율화 방안을 파악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는 우선순위에 재투자될 예정

[기타]

- NHS 및 성인 사회적 돌봄 개혁을 위한 투자와 신규 자원 조달 계획 발표 (2021. 9. 7.)³⁶⁾
 - (개요)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지연 문제 해결, 성인 사회적 돌봄 개혁, 의료 및 사회적 돌봄 시스템의 장기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3년간 의료 및 사회적 돌봄 개혁에 약 360억파운드를 투자할 예정
 - 새롭게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Health

35) 영국 의료서비스 안전,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는 기관

36)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Record £36 billion investment to reform NHS and Social Care," 2021. 9. 7., <https://www.gov.uk/government/news/record-36-billion-investment-to-reform-nhs-and-social-care>, 검색일자: 2021. 9. 17.; HM Government,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21. 9. 7.,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15736/Build_Back_Better_Our_Plan_for_Health_and_Social_Care.pdf, 검색일자: 2021. 9. 17.

- and Social Care Levy)을 도입하고 배당세율을 1.25%p 인상하여 자금을 조달할 계획임
- (의료) 의료 활동 지연 문제 대응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비응급 활동 및 병원 수용력을 제고, 기존 장기 계획을 상회한 추가 자금을 NHS에 지원하여 NHS의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장기적으로 예방에 초점
 - (잉글랜드의 성인 사회적 돌봄) 개혁안에 따라 향후 3년간 성인 사회적 돌봄에 54억파운드를 투자할 예정
 - (돌봄 비용 부담 상한) 2023년 10월부터 잉글랜드에서 거주지, 연령, 조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생 8만 6천파운드를 초과한 돌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 (자산 한도 조정) 자산이 2만파운드 미만의 경우 정부가 모든 돌봄 비용을 부담하여 지원하고 2만~10만*파운드 사이인 경우 돌봄 비용을 부담하지만 자산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도 받음
- * 자산 한도가 기존 2만 3,250파운드에서 10만파운드로 늘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돌봄 인력에 새로운 훈련 및 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해 돌봄의 질을 개선하며, 의료-사회적 돌봄의 통합을 제고할 예정
 - (재원 조달) 신규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과 배당세율 인상을 통해 연간 약 120억파운드의 추가 자금을 조달하여 영국 전역의 의료 및 사회적 돌봄에 투자
 - (신규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 2022년 4월부터 영국 전역에 1.25%의 신규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을 도입(<표 7> 참조)
 - 2022년에는 국가보험기여금(NIC³⁷⁾) 시스템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2023년부터 국가보험기여금과 법적으로 분리하여 부과
 - 모든 개인이 자산(means)에 따라 부담하여 소득 상위 14%의 부담액이 전체 부담금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전망
 -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동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고용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고용공제(Employment

<표 7> 신규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 기여율

(단위: %)

구분	피고용자		고용주	자영업자		
	main rate	higher rate		main rate	higher rate	
2021-22 NIC 기여율(현재)	12	2	13.8	9	2	
2022-23 NIC 기여율	13.25	3.25	15.05	10.25	3.25	
2023-24	NIC 기여율	12	2	13.8	9	2
	부담금	1.25		1.25	1.25	

주: higher rate은 특정 구간 이상 소득 금액에 적용하는 기여율임

출처: HM Government,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21. 9. 7., Table 1.

37)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표 8> 배당세율

(단위: %)

구분	기본세율	상위세율	최상위세율
2021-22 배당세율(현재)	7.5	32.5	38.1
2022-23 배당세율	8.75	33.75	39.35

출처: HM Government,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21. 9. 7., Table 3.

Allowance)를 동 부담금에도 적용³⁸⁾

- (배당세율 인상) 2022년 4월부터 배당세율을 현행 세율 대비 1.25%p 인상(<표 8> 참조)
- (부담금 납부 대상 확대) 2023년 4월부터는 국가연금 수급 연령 이상의 근로자도 동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대상을 확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향후 6개월 동안 NHS에 추가 54억파운드 지원(2021. 9. 6.)³⁹⁾

- (목적)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 의료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 (지원 규모) 향후 5개월 간 총 54억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정부의 올해 코로나19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총 투자규모가 340억파운드를 넘을 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지원 해결과 일상적인 수술 및 치료 제공에 추가 10억파운드 지원

- 의료진과 환자를 바이러스에서 보호하기 위한 감염 통제 조치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에 28억 파운드 지원
- 빠르고 안전한 퇴원 프로그램 지원에 4억 7,800만파운드 지원
- 수술실 수용력과 생산성 향상 기술을 위한 추가 자본 재원에 5억파운드 투자
- 경상비용 6억파운드 등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선임연구원>



중국

[기타]

■ 인민은행 및 은보감회, 헝다그룹 사태에 대한 우려 표명(2021. 9. 29.)⁴⁰⁾

- (배경) 중국 2위의 부동산 기업인 헝다그룹(恒大集团, Evergrande Group)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
- 헝다그룹은 유동성 악화로 인해 공급업자와 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부동산 개발프로젝트의 경우 건설이 중단된 상태⁴¹⁾

38) 중소기업의 NIC 고용주 기여금 부담을 4천파운드까지 감면

39)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Additional £5.4 billion for NHS COVID-19 response over next 6 months." 2021. 9. 6., <https://www.gov.uk/government/news/additional-54-billion-for-nhs-covid-19-response-over-next-six-months>, 검색일자: 2021. 9. 17.

40) 인민은행,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4353020/index.html>, 검색일자: 2021. 9. 30.

41) WSJ, "China Evergrande Says Construction of Some Projects Has Stalled, Warns of Possible Default," <https://www.wsj.com/articles/china-evergrande-says-construction-of-some-projects-has-stalled-warns-of-possible-default-11630412380>, 검색일자: 2021. 9. 30.

-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헝다의 신용등급을 연이어 하향 조정(6.22일: B+ → B, 7.28일: B → CCC+, 9.7일: CCC+ → CC, 9.29일: CC → C)
 - ※ 헝다그룹의 유동성 악화는 중국 금융당국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라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촉발된 것으로 평가됨
- 지난 29일 헝다는 보유한 성징은행의 지분을 99억 9,300만위안에 매각하여 유동성 확보하였으나 디폴트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는 불확실
-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부동산 금융 좌담회에서 금융기관들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보호하고 “주택 구매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할 것을 주문(9. 29.)
 - 헝다그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언론에서는 선분양된 아파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시그널을 전한 것으로 해석⁴²⁾
 - J. P. Morgan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전격적인 구제금융(bailout)을 실시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헝다그룹의 원활한 자산처분을 위한 구조 조정에 개입할 가능성은 존재⁴³⁾
 - 중국 정부는 헝다사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구제금융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헝다그룹 사태가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Not too big-to-fail after all)”이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위험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는 견해를 제시⁴⁴⁾
- Bloomberg Intelligence는 중국 정부의 우선 순위는 주택구매자들에게 완공된 아파트를 인도하여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국영기업이나 다른 기업으로 하여금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를 인수하도록 개입할 수 있음을 제시⁴⁵⁾
- Deutsche Bank는 헝다사태의 전염 위험은 선분양된 주택이 인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실패할 경우 위험이 부동산 부문 전반과 은행부문에까지 전파될 수 있다고 분석⁴⁶⁾
- (향후 대응) 국내 금융당국은 헝다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비해 나갈 방침
 - ※ 거시경제금융회의(9. 23.; 9. 30.)에서 모니터링 강화 및 지속적 대응의 필요성 강조⁴⁷⁾
 - 금융감독원은 헝다그룹을 비롯한 중국 부동산 부문에 대한 부실 우려를 표시하며 대내외 리스크 상황점검 T/F를 가동⁴⁸⁾하겠다고 밝혔으

42) Bloomberg, “China Tells Bankers to Shore Up Property Market, Help Homebuyer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9-30/china-tells-bankers-to-shore-up-property-market-help-homebuyers>, 검색일자: 2021. 9. 30.

43) Morgan, J. P., “China Banks & Property: Rising probability of government intervention, barring bailout, to contain spillover risk of Evergrande defaults,” 2021. 9. 15.

44) Morgan, J. P., “China Credit: An Evergrande default is neither idiosyncratic nor systemic, but an industry-wide problem,” 2021. 9. 20.

45) Bloomberg Intelligence, “Evergrande Could Ease Liquidity Woes on Asset Disposal: React,” 2021. 9. 29.

46) Deutsche Bank, “Awaiting more clarity,” 2021. 9. 21.

47)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결과 보도 참고자료」, 2021. 9. 30.

48) 금융감독원, 「대내외 리스크 상황점검 T/F 가동 보도자료」, 2021. 9. 28.



며 언론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형다 관련 익스포저를 조사⁴⁹⁾

■ 시진핑 주석, 중앙재경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공동부유 강조(2021. 8. 17.)⁵⁰⁾

- (배경) 시진핑 주석은 전·현직 지도자들이 중요 현안을 논의한다는 ‘베이다이허 회의’ 뒤 첫 공개 일정한 중앙재경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공동부유(共同富裕) 강조
 -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건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며 질 높은 발전과 함께 공동부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발표
 - 개혁 개방 이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이나 일부 지역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先富)을 허용했지만 지금은 전체가 잘사는 공동부유가 중요해졌다고 강조
- (방향) 합리적인 분배정책과 민생보장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의 형평성 및 포용성을 제고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조화 추구
 - 분배, 재분배, 재삼분배하는 조정기제를 통해 세수입, 사회보장 지출, 이전성 지출 증대
 - 중간소득계층의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계층의 수입을 증대하며 합리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을 조절하고 불법적인 소득은 금지
 - 합리적으로 과도한 소득을 조정하며 고소득군과 기업이 사회에 더 많이 환원할 수 있도록

록 장려

- 교육수준 향상, 공공서비스 수준 균등화, 연금 및 의료보장 체제 정비, 주택공급 및 보장체계 확립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국무원, 제14차 5개년 취업촉진규획 통지 발표(2021. 8. 23.)⁵¹⁾

- 국무원은 현재 중국의 고용환경에 대해 평가하며 제14차 5개년 시기(2021~2025년) 동안 고용부문의 원칙과 목표 제시
 - 산업의 변화와 기술력의 향상으로 인재 양성 훈련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취업난과 구인난이 공존하는 구조적 실업 존재
 - 도시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고 농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농촌의 많은 잉여 노동력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대규모 실업 리스크 존재
- ‘통지’에서는 산업의 ▲ 고용흡수 능력 증강, ▲ 창업을 통한 고용 유발, ▲ 중점 집단의 취업 지원체계 개선, ▲ 직능교육체계 개선을 고품질 고용 확대 전략으로 제시
 - (고용흡수 능력 증강)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창업 촉진)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를 통한 고용 증가 모색

49) 비즈와치,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1/09/30/0022>, 검색일자: 2021. 10. 1.

50) 신화사, http://www.cac.gov.cn/2021-08/17/c_1630790681109212.htm, 검색일자: 2021. 9. 13.

51) 국무원,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1-08/27/content_5633714.htm, 검색일자: 2021. 9. 27.

- 창업 담보대출 및 금리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창업기업의 직접융자 경로를 넓히고 투자 생태계를 정비하고 조건에 맞는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 창업인큐베이터, 창업엑셀러레이터, 산업단지 등이 서로 연결된 창업 플랫폼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업, 지방정부, 고등교육기관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점집단 지원) 대학 졸업생, 청년 실업자, 농촌 노동력 등 중점 집단별로 취업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취업역량 강화
 - 일자리 확대 캠페인을 통해 공기업이 공개 경쟁 채용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취업능력 향상 캠페인을 통해 대학교와 기업이 연계하는 플랫폼을 적극 구축하고, 대학생 실습 훈련을 광범위하게 조직
 - (직능교육체계 개선) 대규모의 다양한 직업기능교육 실시, 학교와 기업의 협업을 통한 인재 양성체계 구축, 평생 학습체계 완비를 통한 직능교육체계 개선
 - 공공실습훈련기지를 신설하여 기업이 공공 실습훈련기지를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 인민은행, 중소기업 대상 3천억위안 규모의 정책 금융 실시계획 발표(2021. 7. 30.)⁵²⁾
- 인민은행은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중소기업 구제를 위해 3천억위안 규모의 재대출(再贷款)을 신규로 실행할 방침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역의 은행에게 우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평균 5.5%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규정
 - “먼저 대출해주고 나중에 빌려주는(先贷后借)” 형식으로 지역의 은행이 먼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재대출을 신청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재원 연구원>

52) 인민은행,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4337254/index.html>, 검색일자: 2021. 9. 13.

재정포럼

2021년 10월호 통권 제304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김서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21년 10월 15일 발행 / 제25권 제10호(통권 제304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0. 05. 06.

- 0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